

방통융합정책연구 | KCC-2022-4

방송통신 분야 심결 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Efficiency of the
Deliberation & Decision making System in the ICT and
Media

권오상/송송이/이순환/남승용/이수엽/박소은

2022. 12

연구기관 :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 분야 심결 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총괄책임자: 권오상

참여연구원: 송송이

이순환

남승용

이수엽

박소은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현황	3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결제도	3
1.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제도의 의의	3
2. 심결의 법적 성격	4
제2절 심결 대상	5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심결 대상	5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상 심결사항	6
제3절 심결절차	11
1. 회의의 개최 및 의결	11
2. 심의·의결의 주체	13
3. 의견진술	14
4. 심결서 작성	14
5. 관련 조직	15
제4절 심결 결과 통계	20
제5절 최근 심결 경향	28
제3장 국내 유사 규제기관의 심결 현황	30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30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심결의 개요	30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	33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관련 제도	36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관련 조직	41
제2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5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심결의 개요	45
2. 심결절차	47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관련 조직	50
제3절 금융위원회	54
1. 금융위원회 및 심결의 개요	54
2. 금융위원회의 심결(의결) 절차	56
3. 금융위원회 심결 지원조직 현황	58
제4장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심결 현황	61
제1절 미국	61
1. 심결제도 현황	61
2. FCC Agenda Handbook	67
제2절 독일	79
1. 연방네트워크규제청(Bundesnetzagentur; 이하 BNetzA) 내 결정위원회	79
2. 결정위원회의 심결절차	80
제3절 유럽	81
1. 유럽연합 내 집행위원회	81
2. 집행위원회의 집행절차	82
제5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안	86
제1절 시사점	86
1. 국내 심결제도 비교	86
2. 해외 심결제도의 시사점	90
제2절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심결제도 개선사항	92
1. 대심적 구조의 확보	92
2. 심결 총괄 및 전문적인 지원 조직·인력 확보	98
3. 주심위원회와 소회의제도	101

4.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편람의 제안	104
제3절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심결 편람 제안	105
1. 연구반 개요	105
2. 편람 주요 내용	107

표 목 차

<표 2-1>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5
<표 2-2> 타법의 “의결” 명문 규정	7
<표 2-3> 타법상 심결의 대상	7
<표 2-4> 제척사유	13
<표 2-5> 기존 심결지원팀 업무 비교	15
<표 2-6>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담당 조직 현황	18
<표 2-7>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단위:건)	20
<표 2-8> 방통위 조사사건 유형별 심의·의결 현황 (단위 : 건)	21
<표 2-9>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사건 유형별 심의·의결 세부내용	22
<표 2-10>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사건 유형별 심의·의결 세부내용	25
<표 2-11> 2020년도 주요 심의·의결 사례	28
<표 3-1>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심의·의결 예시	31
<표 3-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담당 조직 현황	43
<표 3-3>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인력구성(기준: 2021.12.31, 단위: 명)	44
<표 3-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 비교	44
<표 3-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결 사항	47
<표 3-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결절차	50
<표 3-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담당 조직 현황	51
<표 3-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53
<표 3-9> 금융위원회 심결의 대상	56
<표 3-10> 금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2022.4월 기준)	60
<표 4-1> 미국 FCC 심결 등의 절차 개요	61
<표 4-2> FCC의 직권조사	62
<표 4-3> 일반절차(General Proceeding) - 심결절차	62
<표 4-4> 신속절차	64

<표 4-5> FCC Agenda Handbook 목차	68
<표 4-6> 표제문의 세부구성	71
<표 4-7> 결정문 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73
<표 4-8> 결정문의 세부 구성	74
<표 4-9> 의제회의안건(대면결의) 승인 절차	76
<표 4-10> 의제회의안건(대면결의) 승인 절차	78
<표 4-11> 독일 결정위원회 현황	79
<표 4-12> 집행위원회(EC)의 책임 및 권한	81
<표 4-13>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절차	82
<표 4-14> 집행위원회 및 집행당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Decision) ..	84
<표 4-15> 동의의결 진행 절차	84
<표 5-1> 위원회별 심결제도 비교	86
<표 5-2> 심의의결서 포맷 비교	89
<표 5-3> 심결제도에서의 의견청취 제도	93
<표 5-4> 심결제도에서의 변호인 참여	95
<표 5-5> 디지털 방식 관련 규정	95
<표 5-6> 조사절차의 종결 규정	97
<표 5-7> 담당부서별 범위반 관련 업무(조사 및 제재조치 업무)	98
<표 5-8>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	102
<표 5-9> 방송통신 심결체계 효율화 연구반 운영	106
<표 5-10> 업무편람 세부목차 및 주요내용	109

그림 목 차

[그림 2-1]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17
[그림 3-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도	36
[그림 3-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42
[그림 3-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도	51
[그림 3-4] 금융위원회 조직도	59
[그림 4-1] 안건의 표지	71
[그림 5-1]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심결절차도	107
[그림 5-2] 방송통신 일반 심결사항 절차도	108

요 약 문

1. 제 목

방송통신 분야 심결 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심결제도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의 고도화로 관련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존에 없던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등장함에 따라 심의·의결의 일관성 있는 절차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방송과 통신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결의 양식과 체계는 각각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심결 문서의 형식 등을 통일하여 심결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결절차를 분석하여 변화하는 방송통신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통신 분야 심결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심결지원체계의 정립방안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결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심결 편람(가칭)」을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결제도의 마련을 위해 우선 국내외 규제기간 간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분석한다. 방송통

신위원회에서 심결제도의 의의와 심결제도의 운영 및 관련 조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합의제 운영의 타 기관들의 심결제도를 조사·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외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조직 및 의결절차 등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심결사례 분석을 통해 심결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고, 공정위나 FCC 등 타 규제기관의 심결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제도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심결체계 정형화 등 심결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검토한 심결제도 및 심결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정하고, FCC 등 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매뉴얼을 검토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매뉴얼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심결편람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은 소관 사무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행위로, 특히 금지행위에 있어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는 1차적인 처분절차이다. 이러한 심결은 방송통신분야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대상은 기본계획, 산하조직 등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미디어 다양성, 진입규제, 금지행위의 조사 및 제재, 분쟁조정, 이용자 보호, 주파수 관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정책 관련 사항, 기금, 법령, 예산 등 다양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용자네트워크국 밑에 조사과와 심결지원팀이 같이 있었지만 현재는 심결지원팀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법무담당관과 이용자정책 총괄과에서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최근 심결은 중장기의 실태조사 후 법규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국내 타 위원회 심결제도

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사후규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 행위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과 차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절차에 비해 대심적 구조가 더욱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의의결제도, 전결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도 등 심결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의견청취, 심의속개제 등 심결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 직속의 심판관리관을 두고 있어 심결을 지원하는 조직을 두고 있는 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또한 소회의를 두어 일반사건, 과태료 사건 등 전원회의 소관이 아닌 일반적인 심결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제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 심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신청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도 가능하며, 심의·의결에 앞서 심의·의결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결의 안전 처리 및 행정심판 소송 등을 담당하는 심판 총괄 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안전의 조사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조사조정국에서 이를 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와 같이 소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심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가 심결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결한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 심결제도

금융위원회의 경우 심의·의결의 대상을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에는 금융기관의 제재, 인·허가 사항,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소관 법령이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등 관계전문가를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심결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소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원회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달리 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안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심결 현황

① 미국

FCC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하며,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심결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심결절차의 개시에는 직권조사에 의한 경우와 민원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심결절차는 일반절차와 신속처리절차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심결에 있어 청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청문사전절차로 사실관계 및 문서 진정성 확인, 청문 전 회의, 약식결정, 동의명령 제도가 있다.

FCC는 심결 및 안건 작성을 위한 Agenda Handbook을 마련하고 있다. 핸드북에는 용어의 해설, 결정문 준비부터 포제문 준비, 결정문 승인, 결정문 인쇄와 공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의 고려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특히 결정문 작성에 있어 작성자의 태도와 방향, 형식적 목차와 세부구성 등을 제시하여 결정문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다.

② 독일

독일의 경우 연방네트워크규제청(BNetzA)내의 결정위원회가 조사와 규제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다. 결정위원회는 주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위원회에 최소 1명은 법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심결절차에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한다.

③ 유럽연합 내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제재조치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정조치 뿐 아니라 임시조치와 동의를결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는 최종결정 전에 언제든지 동의를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라. 시사점 및 개선방안

① 심결 총괄 및 전문적인 지원 조직·인력 확보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소속의 별도 팀으로 심결업무를 총괄·지원하는 조직이 있다. 복잡해지고 다방면의 전문성이 필요해지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심결에 대한 총괄·지원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심결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효율적인 심결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② 증거자료의 적절성 확보

심결 진행에 있어 사업자들이 낸 1차 자료들을 가공하여 요약본으로 첨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증거에 피조사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위원들의 1차 자료에 대한 접속권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디지털 방식 도입의 강화

ICT 기술 발전과 COVID-19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 전반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대응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심결의 전 과정에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장비,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④ 의견청취제도의 제도적 보장 강화

실태점검 단계부터 위법성 판단 단계, 시정조치안 제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조사자 내지 피심인의 의견청취제도가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사실조사,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과정을 볼 때 실태 점검시부터 사업자들이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절차가 중요하며, 통지시 의견의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변호인 참여제한의 완화

심결절차에서 대심구조를 구축하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심결제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많은 편이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항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다른 사례를 고려하여 업무처리 지침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에 대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종결처리 가능성 제고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에서 종결처리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결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종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⑦ 소회의 제도(도입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합의제기관과 달리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합의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의 심결절차에서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과 연결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도입은 현재의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조사·심사편람의 제안

심결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피조사자나 피심인에게는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 심결업무에 활용할 편람과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업무편람은 I. 절차, II. 양식, III. 쟁점, IV. 사례의 목차로 마련하였으며, 각 목차별 세부사항 별로 해당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및 방법, 예시 등을 마련하였다.

목차	주요내용
I. 절차	
1. 사실조사	
가. 사실조사 일반	o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의 성격, 근거, 조사원칙
나. 사실조사의 단서	o 사실조사 개시 단계의 절차 : 신고, 인지
다. 사실조사의 착수 및 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o 사실조사 착수 단계의 절차 o 실태점검 단계의 의견청취 절차
라. 사실조사의 방법	o 사실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 자료 등 제출명령, 출석요구 및 사실확인(사실조사 단계의 의견청취 절차), 현장조사, 디지털증거조사
마. 변호인의 참여	o 변호인 참여 및 제한 원칙
바. 사실조사의 기간	o 사실조사 처리 기간
사. 조사보고서의 작성	o 조사보고서 작성, 등록, 보고 방법 o 보완조사 원칙
아. 사실조사절차의 종결	o 조사절차의 중지 및 종결 기준, 절차 o 재조사 원칙
자. 사건기록 보관방식 및 보관기간	o 자료 작성·수집·접수 방법 o 자료의 보관 및 폐기 기간
2. 시정조치안의 작성 및 의견진술	
가. 시정조치안의 작성	o 시정조치안 작성 방법 및 내용
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o 시정조치안 작성 단계의 의견청취 절차
3. 위원회의 의결	
가.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o 시정조치안의 위원회 보고, 심의준비절차 개시
나. 시정조치안의 의결	o 시정조치안 의결 절차 o 의결의 유형 : 경고, 재조사, 심의절차의 종료, 무혐의, 사건종결처리, 심의중지
4. 처분	
가. 의결서의 작성과 통지	o 의결서 작성 및 통지 방법
나. 시정명령	o 시정명령의 기간,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보고 절차
5. 이의신청	
가. 절차	o 과징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이의신청 처리 방법

나. 재결 등	o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절차
6. 행정심판	
가. 절차	o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방법
나. 재결 등	o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절차
7. 행정소송	
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부	o 취소소송 제기 조건
나. 제소기간	o 취소소송 제기 기한
II. 양식	
1. 심결서 양식 개선의 기본방향	
가. 명확성	o 심결서 작성의 기본 3가지 원칙
나. 간결성	
다. 가독성	
2. 안건	
가. 심의·의결 안건	o 심의·의결안건 작성 방법 및 내용 - 표지 : 의안번호, 의결일자, 공개여부, 안건제목, 제출자, 제출일자 - 내용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 향후일정(계획), 참고사항 o 현행 심의·의결안건 표지 서식, 내용 서식
나. 보고안건	o 보고안건 작성 방법 및 내용 - 표지 : 보고일자, 공개여부, 보고제목, 작성과, 작성일자 - 내용 :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검토사항, 추진일정, 기타 o 현행 보고안건 표지 서식, 내용 서식
3. 심의·의결서	
가. 심의·의결서의 작성	o 의결서 작성 및 통지 절차
나. 심의·의결서의 주요 항목	o 의결서의 내용 : 안건번호, 안건명, 피심인인, 의결일, 주문, 이유,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o 현행 심의의결서 서식
4. 심의·의결서의 문체 및 용어	
가. 주문	o 주문의 내용 및 예시 : 시정조치 번호부여,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과태료, 시정권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행계획 제출, 보고의무
나. 이유	o 이유의 내용 및 예시 : 기초사실(당사자 적격성, 사건 개요),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행위사실, 피심인의 주장, 관련규정, 인정사실, 판단),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결론
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o 이의제기 안내 방법 및 예시
III. 쟁점	

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가. 총론	○ 금지행위 의무 주체 및 이용자의 범위 ○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나.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 다. 이용약관 위반행위 라.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마. 중요한 사항 미설명·고지 또는 거짓설명·고지 바. 부당한 선택앱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제한 등 사. 앱 마켓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 금지행위 유형 별 해석
2. 방송법상 금지행위	
가. 총론	○ 도입배경, 수범자의 범위, 금지행위 유형
나.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및 필수설비 접근 거부 등 행위 다.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라. 방송시청의 방해 등 마. 부당한 시청자 차별 바. 이용약관을 위반한 방송서비스 제공 등 사.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행위 아. 홈쇼핑 PP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자.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금지행위 유형별 해석
IV. 사례	
1. 무선통신 2. 부가통신 3. 방송	○ 편람 양식에 의거하여 유형 별 대표사례를 가공하여 제시

5. 정책적 활용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업무 수행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업무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통일되고 체계화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심결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서 작성에 있어 통일된 체계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일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국민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심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기대효과

심결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해냄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업무 수행의 신뢰성 제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반 국민의 권리가 더 보장 될 것이다. 「심결 지원 편람(가칭)」의 마련으로 위원회의 심결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으로 참여한 이슈에 대해 분쟁의 여지를 감소시키고 방송통신 관련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절차에 준하여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심의·의결 절차가 심결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에 있어 소관 법의 위반 등이 있는 경우 구성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결업무는 위원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결제도는 특히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 정책이나 보호에 대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절차 및 처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 분야가 고도화되면서 관련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기존에 없던 유형의 사업자나 글로벌 사업자 등이 등장하게 되어 심의·의결의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심의·의결 양식과 체계는 각각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심결의 절차나 그 문서의 형식 등을 통일하여 심결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심결절차를 분석하여 바뀌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통신 분야의 심결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심결지원체계의 정립 방안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심결서 작성시 전문가의 법률지원 등 심결업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결업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심결 편람(가칭)」을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편람은 심의·의결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방침과 함께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심결업무에 있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심결에 대한 편람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의 각 분야에서 첨예한 이슈 대립을 줄이고, 분쟁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등의 심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문가의 법률지원, 분쟁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 심결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심결의 정형화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결제도의 마련을 위해 우선 국내의 규제기간 간 제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분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결제도의 의의와 심결제도의 운영 및 관련 조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공정위원회 등 합의제 운영의 타 기관들의 심결제도를 조사·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외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조직 및 의결절차 등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심결사례 분석을 통해 심결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고, 공정위나 FCC 등 타 규제기관의 심결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제도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심결체계 정형화 등 심결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검토한 심결제도 및 심결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정하고, FCC 등 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매뉴얼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매뉴얼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심결편람, 전산시스템의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장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현황

제 1 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결제도

1.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제도의 의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과 함께 방송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보호나 통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한다.¹⁾ 또한 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2조),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제도²⁾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과 중편, 보도 채널에 대한 정책 및 통신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 분야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심판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소관사무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위만 사건을 대상으로 심결을 하는 반면(심판에 따른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심결(심의에 따른 결정)을 하는 차이가 있다.

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결은 특히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준사법절차로서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결정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방송·통신분야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심결의 법적 성격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결은 소관 사무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로 결정하는 행위이다.³⁾ 심결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이 공법상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행위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는 단지 제1차적 처분절차이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의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심결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국민은 이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야 한다.⁴⁾ 즉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의 행위여야 한다. 행정청이란 처분이나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행정청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②공권력적 행위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에 따라 유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 법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여야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심결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3)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독임제 부처에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행정행위 발령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마지막으로 ④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여야 한다.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이나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권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결은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심결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제2절 심결 대상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심결 대상

방통위법은 제12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심의·의결 사항에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제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금지행위 위반과 방송통신을 둘러싼 각 분쟁사항에 대한 내용,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산하 기관 등 조직·운영 등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미디어 다양성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진입규제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 조사·제재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
13.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제 일반 (주파수 관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사항 포함)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예산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기타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상 심결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법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루어진다. 다른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타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대상에 해당한다. 명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정,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의 위촉 등이 있다.

<표 2-2> 타법의 “의결” 명문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방송·통신 관련 규정 중 시정명령, 제재조치,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에 관한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심결의 대상에 해당한다.

<표 2-3> 타법상 심결의 대상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나.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대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5조의2(금지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명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9조(시정명령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금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3.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4조(과태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시정명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⑥ 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3절 심결절차

1. 회의의 개최 및 의결

심결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적인 의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결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심결을 위해서는 우선 의결의 개최가 필요하다. 의결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⁵⁾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⁶⁾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⁷⁾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⁸⁾

심결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를 여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중 3인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이 이루어진다. 운영규칙은 의결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면서 의사정족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¹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예외적인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¹¹⁾ 비공개 사유는 ①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6) 안건의 종류는 심의·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된다(「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7)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항.

8)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단서.

9)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10)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입법형태에는 ①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같이 정하는 방법(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과 의결정족수만 규정하는 방법(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있다.

1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또한 회의록과 속기록도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¹²⁾

심의·의결 안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이에는 ①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②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¹³⁾ 위원회는 이런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¹⁴⁾ 서면결의를 위해서 위원장은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서면결의 안건을 제의하여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¹⁵⁾

금지행위 심결의 경우

금지행위의 경우 심결 안건으로 제의되기까지 ‘인지 → (실태점검) → 사실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안 작성 → 시정조치안 사전통지·의견청취 → 시정조치 안건화’의 절차를 거친다.

-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 제3조). 방통위는 신고를 받거나 금지행위 가능성 있는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실태점검을 하여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한다. 만약 금지행위 혐의를 인지했다면 실태점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실조사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업무처리규정 제4조).
- ② 사실조사 단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업무처리규정 제7조). 조사를 마치면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동규정 제9조).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무처장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동규정 제10조).
- ③ 해당 국장은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한다(업무처리규정 제12조).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 규정제13조).

1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1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4)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1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 ④ 해당 국장은 시정조치안에 대해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의결안건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심의·의결의 주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심의·의결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회의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심결 안건에 대해 인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원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해 심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원이 안건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당사자와 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 사안에 관련한 밀접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¹⁶⁾ 이 경우 사안의 당사자가 제척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에 의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¹⁷⁾

<표 2-4> 제척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

-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③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④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⑤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또한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운 사정은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요소로 인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기피신청과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만 기피 결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동일한 안전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¹⁸⁾

그리고 제척사유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¹⁹⁾

3. 의견진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등에 대해 안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²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며,²¹⁾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²²⁾

4. 심결서 작성

심의·의결 안전이 심의·의결되어 심의·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심결 안전의 과·팀장은 심의·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²³⁾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오산, 오기나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²⁴⁾ 심결서 작성을 심결 안전의 과·팀장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심결서 작성의 형식이 소관 과·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운영규칙에는 별지를 마련하여 심결서 작성에 있어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2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21)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2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24)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심의·의결서에는 안전 번호, 안전명, 피심의인, 의결일, 주문, 이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이 적시된다.²⁵⁾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안전 번호는 위원회 회의 상정 시 부여받은 번호이며, 안전명은 위원회 안전명을 기입하거나 법률명과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기입한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제재를 정하는 심의를 하는 경우, 주문에는 피심의인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입하고, 이유에는 기초사실,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 판단,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기입한다. 또한 이의제기 관련 법령과 그 기간을 명기하여 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관련 조직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용자네트워크국 밑에 조사과와 심결지원팀이 같이 있었지만,²⁶⁾ 현재는 심결지원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심결지원팀의 업무는 행정법무담당관과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심결지원팀의 폐지로 심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부재한 상태이다.

<표 2-5> 기존 심결지원팀 업무 비교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이용자네트워크국) ⑧ 심결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	제7조(이용자정책국) ③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금지행위 관련 안전의 심결 보좌

2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26) 2008년 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이용자네트워크국) ③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통신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심결지원팀·방송환경개선팀·네트워크기획과·인터넷정책과·네트워크안전과·개인정보보호과 및 네트워크윤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p>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 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관련 안전 조사 보고서의 검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전 조사 보고서의 검토 3.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 안전 조사보고서의 검토 4.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 안전 심결보좌 5.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전 심결보좌 6.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전 심결보좌 7.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8.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9.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개정 10. 방송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 1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재정사건의 처리, 이행여부 점검 및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전조사 보고서의 검토 12.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의 검토 13.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18.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1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20.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2.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3.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24. 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가 문단의 구성 및 운영 25.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p>제5조(기획조정관)</p> <p>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위원회의 소집, 안전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원회의 회의 안전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23. 회의록·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24.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

현재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운영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정책총괄과에서는 금지행위 관련 법제도와 조사의 총괄을 맡고 있다.

[그림 2-1]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행정법무담당관실은 소관 심판·소송에 대한 총괄 및 법률지원 업무²⁷⁾와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의 심결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결지원 업무 뿐 아니라 고유 업무도 같이 수행한다. 금지행위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조사업무 총괄, 심결보좌, 동향·통계분석 등 심결의 총괄 성격적 업무는 여전히 이용자총괄과에 남아있다. 또한 금지행위의 조사 및 제재조치 등 실무는 분야별로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27) 제5조(기획조정관) ④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1.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1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표 2-6>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담당 조직 현황

구분(명)	주요 직무
기획조정관	
행정법무 담당관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 및 총괄 ◇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개정 ◇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 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 금지행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 금지행위 관련 안전의 심결 보좌 ◇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전조사보고서의 검토 ◇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 통신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재결서 작성 ◇ 금지행위 및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4절 심결 결과 통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²⁸⁾ 심의·의결 안건 중 방송통신사업의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이 735건으로 대부분(93%)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고시 등 제·개정에 관한 것이 34건(4.3%), 통신재정에 관한 사안이 21건(2.17%)였다.

<표 2-7>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현황 (단위: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조사사건	210*	59	258	49	159	735 (93.0%)
법령·고시 등	16	6	1	3	8	34 (4.3%)
통신재정	0	7	9	5	0	21 (2.7%)
총계	226	72	268	57	167	790 (100.0%)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심결집, 2016년 조사사건 관련 연도별(210건, p.16) 유형별(214건, p.22) 달리 게재되어 있음

조사사건의 경우, 전체 739건 중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반행위(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부당한 차별지급 등) 612건(82.8%)을 차지하였으며, 이용자 이익침해 81건(11%), 기타 46건(6.2%)²⁹⁾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 중 금지행위 조사사건의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³⁰⁾

2016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 중 조사사건은 214건으로 ① 이용자 이익침해가 28건 ②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이 165건, ③ 기타 사안이 26건(이용약관 위반 18건,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 5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의무 조치 미이행 3건)을 차지하였다.

2017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안 중 조사사건은 59건으로 ① 이용자 이익침해 사안은

28) 2020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29) 이용약관 위반,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불이행, 거래조건 차별 등이 기타 사건에 해당한다.

30) 2020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4건, ②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은 47건, ③ 기타 사안은 8건(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 일부 전가 7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등 중요사항 미고지 1건)을 차지했다.

2018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 중 조사사건은 258건으로 이 중 ① 이용자 이익침해 사안이 21건, ②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이 234건, ③ 기타 사안이 4건(이용약관 위반 2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1건)을 차지하였다.

2019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 중 조사사건은 49건으로 ① 이용자 이익침해 사안이 2건, ②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이 39건, ③ 기타 사안이 8건(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불이행 3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5건)을 차지하였다.

2020년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 중 조사사건은 159건으로 ①이용자 이익침해 사안이 26건, ②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안이 127건, ③ 기타 사안은 6건(이용약관 위반 1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판매 대행 시 거래조건 차별 1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4건)을 차지하였다.

<표 2-8> 방통위 조사사건 유형별 심의·의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단말기유통법위반	165	47	234	39	127	612 (82.8%)
이용자이익침해	28	4	21	2	26	81(11.0%)
기타*	21	8	3	8	6	46 (6.2%)
총계	214	59	258	49	159	739 (100.0%)

* 기타 사유

- 2016년(26건) : 이용약관 위반 18건,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 5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의무 조치 미이행 3건
- 2017년(8건) :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 일부 전가 7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등 중요사항 미고지 1건
- 2018년(4건) : 이용약관 위반 2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1건
- 2019년(8건)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불이행 3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5건
- 2020년(6건) : 이용약관 위반 1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판매 대행 시 거래조건 차별 1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4건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사건을 보면 유형별로 지속적으로 심의·의결사항이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하는 규칙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각 연도별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사건이 제재와 심의·의결 사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년도의 기타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사안이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현황을 살펴봄에 있어 건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심의·의결의 세부 내용이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시장의 변화에 따라 심결의 세부내용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대표적인 안건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사건의 유형별 심의·의결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9>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사건 유형별 심의·의결 세부내용

연도	구분	안건명	사업자
2016	단말기 유통법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 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3.10)	이동통신유통점 100개사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한 행위(7.8)	LGU+ 임직원 3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 거부·방해, 관리감독 소홀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9.7)	LGU+ 유통점 59개사
	이용자 이익침해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2.4)	알뜰폰사업자 19개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SKT 등 7개사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등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26)	카카오 등 2개사
	기타	이용약관 외 할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2.4)	KT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행위(12.21)	MSO 14개사 및 IPTV 3개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5.26)	웹하드사업자 3개사
2017	단말기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이통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SKT, KT, LGU+

연도	구분	안전명	사업자
	유통법 위반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예한 행위(3.21)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공시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중 일부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42개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사전승낙제 위반행위 (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이용자 이익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12.6)	SKT, SKB, KT, LGU+
	기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킨 행위 등(9.14)	(주)지에스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등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 (3.21)	KT
2018	이용자 이익침해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12)	KT 등 20개사 KT, LGU+, SKB, 벤사업자 등 17개사
		접속경로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3.21)	페이스북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법인 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대형유통점 1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유통점(171개사)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10.25)	56개 유통점
	이용약관 위반	(주) 티브로드 및 (주)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31)	(주) 티브로드, (주) 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0.25)	위드디스크	

연도	구분	안전명	사업자
2019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3.20)	SKT, KT, LGU+ 유통점(35개사)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7.9)	SKT
	이용자 이익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해지제한 관련 사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6.26)	SKT, SKB
	기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 (10.23)	CMB KT Skylife 현대HCN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4.17)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5개사)	
2020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7.8)	SKT, KT, LGU+ 유통점(124개사)
	이용자 이익침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전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1.22)	Google LLC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9.9)	SKT, SKB, KT, LGU+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7)	케이티 파워텔(주)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1.24)	인타넷신문사업자 (21개사)
	기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4)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9)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4개사)	

<표 2-10>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사건 유형별 심의·의결 세부내용

연도	구분	안전명	사업자
2016	단말기 유통법 위반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 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 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3.10)	이동통신유통점 100개사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한 행위(7.8)	LGU+ 임직원 3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 거부·방해, 관리 감독 소홀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9.7)	LGU+ 유통점 59개사
	이용자 이익침해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2.4)	알뜰폰사업자 19개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SKT 등 7개사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등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 용자 이익 저해행위(12.26)	카카오 등 2개사
	기타	이용약관 외 할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2.4)	KT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법령 상 금지행위 위반행위(12.21)	MSO 14개사 및 IPTV 3개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5.26)	웹하드사업자 3개사
2017	단말기 유통법 위반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이동3사가 대리점 및 판매 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예한 행위(3.21)	SKT, KT, LGU+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공시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중 일부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42개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사전승낙제 위반행위 (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이용자 이익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 해하는 행위(12.6)	SKT, SKB, KT, LGU+
	기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 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킨 행위 등(9.14)	(주)지에스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

연도	구분	안전명	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등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 (3.21)	KT
2018	이용자 이익침해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12)	KT등 20개사 KT, LGU+, SKB, 밴사업자 등 17개사
		접속경로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3.21)	페이스북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법인 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대형유통점 1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유통점(171개사)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10.25)	56개 유통점
	이용약관 위반	(주) 티브로드 및 (주)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31)	(주) 티브로드, (주) 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0.25)	위드디스크	
2019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3.20)	SKT, KT, LGU+ 유통점(35개사)
		에스케이텔레콤(주) 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 (7.9)	SKT
	이용자 이익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해지제한 관련 사용자이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6.26)	SKT, SKB
		기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 (10.2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4.17)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5개사)		
2020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7.8)	SKT, KT, LGU+ 유통점(124개사)

연도	구분	안전명	사업자
	이용자 이익침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전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1.22)	Google LLC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9.9)	SKT, SKB, KT, LGU+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7)	케이티 파워텔(주)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1.24)	인터넷신문사업자 (21개사)
	기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9)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4개사)

제5절 최근 심결 경향

단말기유통법의 위반 및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의결은 계속해서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의 확보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0년 심결례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우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문제점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한 후 법규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 중장기의 기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여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처분에 대한 심결이 이루어져 새롭게 문제되는 현안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 실태조사 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이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용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2-11> 2020년도 주요 심의·의결 사례

- ◇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관련, Google LLC의 유튜브 이용자 가입 의사 확인 절차 미흡,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 해지권의 부재로 인해 미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조치의 어려움이 발생
 - ‘ 20.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로 규정
 - Google LLC 대상으로 8억6700만원 과징금 납부 및 시정조치 사실공포,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내용으로 하는 심의·의결, Google LLC는 시정조치
- ◇ 인터넷 포털 및 온라인쇼핑몰 대상 플로팅광고 실태점검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 대상 행정지도 후, 법규 위반 사항 심의·의결 통해 제재 조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
 - ‘ 17.4.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 대상 플로팅광고 실태점검 후,’ 20.11.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플로팅광고 게재 인터넷신문사업자 21개사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반으로 심의·결의
 - ‘ 20.12. 무분별한 플로팅광고 게재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안내서’ 발간해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법규 준수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2021년 4월 KT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에 관한 유튜브의 문제 제기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에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 인터넷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최근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구글이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는 구글이 2022년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자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버전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하는데 대해 금지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것이다. 이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³¹⁾을 근거로 구글, 애플, 윈스토어,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31)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라 불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환급 분쟁의 통신분쟁 조정 대상 포함, 특정 결제방식 강제 또는 심사 지연·삭제 등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장 국내 유사 규제기관의 심결 현황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심결의 개요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구현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소관의 위반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4조에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에 속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무³²⁾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상임위원,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심결 역시 전원회의에 의한 경우와 소회의로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32) 공정거래법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다. 심결의 의의 및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크게 심사·심의·의결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중 심의는 심사보고를 받은 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는 과정이며, 의결은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심의와 의결을 합친 것이 심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대상은 공정거래법 등 위원회 소관법령 중 범위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령은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 책임법」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각 법률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1>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심의·의결 예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징수 및 채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사전심사)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

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는 ‘사건인지 및 예비조사 → 본조사 및 심사 → 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결과 통지 및 조치 절차를 통해 처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 인지단계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다. 통상 직권조사는 당해 행위가 중대하거나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실시한다. 따라서 위반 혐의에 대한 인지는 직권인지가 원칙이며,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나. 조사단계

① 예비조사 및 사전심사

심사관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및 검토과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³³⁾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조사

심사관은 조사 및 사전심사 결과 심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심사 착수 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를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심사관은 사전

33)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관련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적용대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각 호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심사 결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에게 i) 사건명, ii) 사건의 단서, iii) 사건의 개요, iv) 관계법조를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산망을 이용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건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과 피조사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사건을 등록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³⁴⁾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조사기간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제출하거나 전결처리³⁵⁾를 하여야 한다. 만약 조사 결과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의견(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보고서에 제시한다. 보고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무청장에게 결재를 받고 이후 위원회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다. 심의·의결

심사관이 심사보고서³⁶⁾를 위원회의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하면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원 간 합의를 진행한다.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구조 하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심의는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의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 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가 종료하면 위원

34) 조사기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복잡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더 장기의 조사기간을 인정하고 있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35) 전결처리에는 심사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이 있으며(제61조), 중대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사무처장이 전결하도록 하거나 전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6) 심사보고서에는 ① 사건의 개요 ② 시장구조 및 실태, ③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④ 사실의 인정, ⑤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⑥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용상황의 조사여부, ⑦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⑧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⑨ 첨부자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 여부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재심사 명령,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 가능하다.

의결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의결서 송달 및 결과 통지

심판관리관은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의결이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과징금 부과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관에는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마. 불복절차

심의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가능하다. 피심인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관은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에 제출한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이 가능하다. 만약 처분이나 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

[그림 3-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절차도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관련 제도

가. 동의의결제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데, 이를 동의의결제도라고 한다.³⁷⁾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동의의결로 사건이 종결되면, 이해관계인 등의 제3자는 동의의결의 대상 사실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심사관은 동의의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인적사항, 해당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 검토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동의의결 개시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회의는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

37)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가맹사업법 제34조의2, 방문판매법 제50조의2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

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 부합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³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률·경제·정보통신 분야·소비자 보호 관련 분야 등 제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³⁹⁾

각 회의는 보고 후 14일 이내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⁴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절차는 중단된다.⁴¹⁾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 합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⁴²⁾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사건의 개요, 관련 시장 구조 및 실태, 위법한 경우 적용 가능한 개별법 조항, 시정방안 내용, 이행계획, 기타 관련 서류의 사항 등을 기재한다.⁴³⁾

심사관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⁴⁴⁾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⁴⁵⁾ 심사관은 의견 수렴기관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심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⁴⁶⁾

각 회의는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 인용여부를 결정하며, 심의기일에 이해관계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⁴⁷⁾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40일 이내에 동의 의결서의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

38)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전문.

39)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40)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

41)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2)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43)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44)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45)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46)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47)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다.⁴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⁴⁹⁾

만약 사정변경의 사유⁵⁰⁾가 발생한 경우 동의 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의를결의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⁵¹⁾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⁵²⁾

나. 전결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특정한 경우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전결을 할 수 있는 경우 전결을 하게 되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는 전결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동 규칙 제53조(심사절차종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심사절차 종료, 제54조(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제55조(종결처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종결처리를, 제56조(심의중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 등 중지를, 제57조(경고)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58조제2항(시정권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9조제1항(과태료 부과), 제60조제1항(고발)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 규칙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할 시 전결할 수 있

48)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14조

49)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50)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51) 「동의를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52) 공정거래법 제92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5, 방문판매법 제50조의5.

다.

다만 i) 해당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ii)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우로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범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 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iii)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 대신 사무처장이 각각 심사절차종료와 무혐의로 전결할 수 있다. 또한 제58조(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사무처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만약 제57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가 범위반의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소회의에 상정되며, 심의에 의해 처리된다.

다. 사전심사 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서면 회답해주는 제도이다. 이때 회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작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과 차이가 있다.⁵³⁾

이는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가이드로 제공된다. 법적 안정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가 해소되고 사업자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사후시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타사업자의 손해방지

53)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case.ftc.go.kr/ocp/co/preaudtSystem.do;jsessionid=mdRN5Rhi5g5OFqQP7o0cwkod.OCP21>

및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 등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⁵⁴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심사를 청구한다.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적법 여부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i)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나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ii)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iii)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iv)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이나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현시점에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v)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vi)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않는다.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회답을 하는 경우 이는 행정법상 확약에 해당하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변경되거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답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청구의 회답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라. 심결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

이밖에 심결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의견청취, 심의숙개제, 심의분리제, 출석시차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① 사전의견청취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정식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54)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 청구인이 실시하기로 계획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추진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는 대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각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정식 심의에 앞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진행 하에 주요 쟁점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등 대상이다.

② 심의속개제는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 심의기일을 정하여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심의분리제는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이다. 피심인 또는 참고인이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내용과 필요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등에게 분리 심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석시차제는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 밖에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 시 통역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제도를 심결절차에서 응용하고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관련 조직

공정거래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결정문 작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과 분야별 하위 담당관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림 3-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 담당한다. 심판관리관은 전원회의 시 함께 배석하여 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실시하기도 한다. 심판관리실은 5개과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37억6천5백만원(2021년 말 기준)이다.⁵⁵⁾

55)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관련 비용부담이 포함

<표 3-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담당 조직 현황

구분(명)	주요 직무
심판관리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사건처리절차 및 제재수단 관련 제도 운용 ◇전원회의·소회의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등의 심의·의결 보좌 :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사실관계·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며 의결서·결정서를 작성·통지 ◇소송수행 관리 및 판례 분석·교육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및 각종 연구회·발표회 운영 ◇사건처리 관련 통계 관리
심판총괄 담당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 종합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 운영 ◇대학생 모의 공정위 심판경연대회 업무 ◇위원회 소관 사건통계 관리
경쟁심판담당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심결보좌 ◇제1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 통지 ◇제1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 통지
협력심판담당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심결보좌 ◇제2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 통지 ◇제2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 통지
소비자 거래심판담당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관련 법률 심결보좌 ◇제3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 통지 ◇제3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 통지
송무 담당관(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소관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수행

<표 3-3>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인력구성(기준: 2021.12.31, 단위: 명)

구분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기타	계
심판관리관	1(1)								1(1)
심판총괄		0(1)		0(1)	5(3)	7(5)	0(1)		13(11)
경쟁심판			1(1)	0(1)	6(4)	1(1)	0(1)	1(0)	9(8)
협력심판			1(1)	1(1)	4(4)	1(1)		1(1)	8(8)
소비자거래심판			1(1)	0(1)	4(3)	1(1)		1(1)	7(7)
송무			1(1)	2(1)	5(6)	2(1)	0(1)	2(0)	12(10)
계	1(1)	0(1)	4(4)	3(5)	24(20)	12(9)	0(3)	5(2)	50(4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개방형직위(심판관리관)안내 자료’, 2022.2

전원회의는 법규 등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을 다룬다. 소회의는 일반사건, 과태료 등 전원회의의 소관이 아닌 일반적인 심결사항을 담당한다.

<표 3-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 비교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소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제 2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심결의 개요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적 성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나 관련 법규위반에 관한 사안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계획의 수립이나 정책의 마련, 소관 법령 및 규칙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2020년 법개정을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⁵⁶⁾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⁵⁷⁾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은 2명은 위원장의 제청, 2

56)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57) 행정안전부(공공/민간 총괄분야),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분야),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정보 조사·처분)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반복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 심결의 의의 및 대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⁵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나뉘는데 심의·의결안건에 대한 처리가 심결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2항제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제33조제3항), 과징금 부과(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의견제시 및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제61조), 개인정보 침해 시 시정조치(제64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시의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개선권고·시정조치 명령·고발 또는 징계권고·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결과 공표(제66조), 과태료 부과(제75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사항과 제재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개인정보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도 심결 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간 의견의 조정, 법령의 해석·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기업 등이 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58)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표 3-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결 사항

구분	내용
정책·제도 개선 및 법령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9조,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운용 •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 • 영향평가 결과(제33조제3항)
의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이용·제공(제18조제2항제5호)
제재 등 각종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 및 과태료 부과(제75조)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 시정조치(제64조) •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 처리 결과의 공표(제66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2. 심결절차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심의·의결 신청 → 심의·의결 대상 여부 검토 → 안건검토 → (소)위원회 안건상정 → (소)위원회 심의·의결 → 종결’ 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 심의·의결 신청 및 대상여부 검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은 심의·의결 안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청한다.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신청사항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신청사건이 심의·의결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사건은 반려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중

①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② 수사 중인 경우, ③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④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⑥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⑦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⑧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⑨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⑩ 그 밖에 ①부터 ⑨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나. 안전검토 및 안전상정

안전검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도출하며, 자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심의(안)을 작성한다. 심의·의결안의 소관 부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작성·제출된 안전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전을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안전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안전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안된 안전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검토된 안전은 소관 부서에서 안전 검토안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회의에 해당 안전을 배부하는 절차를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⁵⁹⁾ 이때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결안을 제의할 수 있다. 회의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다. 심의·의결

안전이 회의에 상정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그 안전을 심의·의결한

59)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0.

다.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⁶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면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⁶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②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를 할 수 있다.⁶²⁾

또한 안전의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⁶³⁾ 이때 출석해야 할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대표자가 출석함이 원칙이지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⁶⁴⁾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한이 종료한 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라. 종결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면 신청기관 등 관계기관에 심의·의결서를 송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심의·의결서를 공개한다.

6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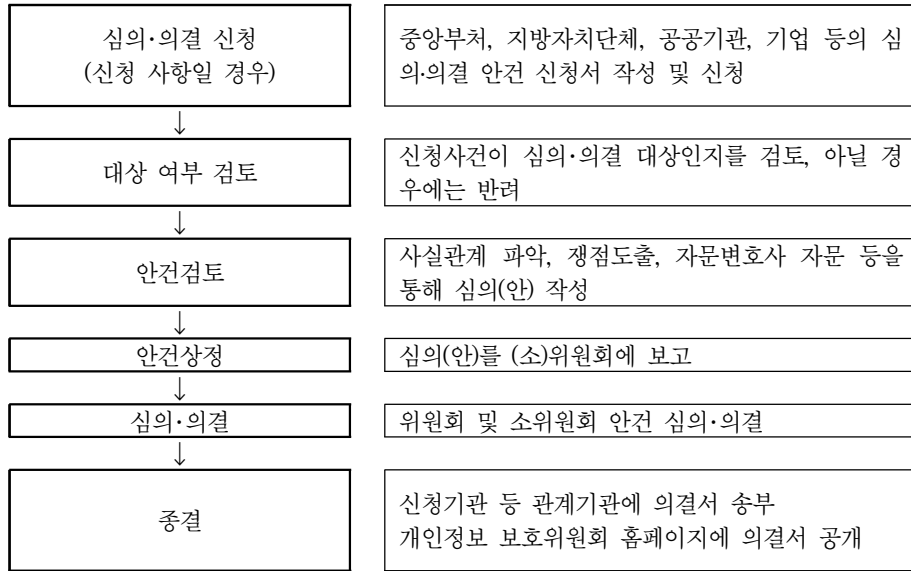
6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62)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2항.

6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6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표 3-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결절차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관련 조직

가. 관련 조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7인)을 포함한 170명의 조직이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로 구분되며, 사무처 아래에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⁶⁵⁾ 현재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결의 안전 처리 및 행정심판 소송 등을 담당하는 심판총괄 담당관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의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조사조정국 등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다.

6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

[그림 3-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직도



<표 3-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담당 조직 현황

구분(명)	주요 직무
기획조정관(1) 심판총괄 담당관(19)	◇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의결 안전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등
조사조정국(60) 조사총괄과 조사1~3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 소관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국의 이전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개선권고,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	---

나. 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기관, 기업 등에서 심결을 신청한 사항 등)을 심결할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⁶⁶⁾ 현재 2개의 소위원회(제1, 제2)를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월 2회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반면, 소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⁶⁷⁾ 소위원회가 심결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결한 것으로 본다.⁶⁸⁾

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항 중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심결을 신청한 경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이를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다만 상정된 안전이 중대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전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6) 소위원회 위원장 및 구성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67)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68)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제3항.

<표 3-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p>위원회 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p>소위원회 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결 •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구성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가 심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결한 것으로 봄

제3절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및 심결⁶⁹⁾의 개요

가. 금융위원회의 법적 성격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서비스 관련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제3조에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앞서 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⁷⁰⁾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4인(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위원장 추천 금융전문가 2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

69) 일반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심결이란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다른 위원회의 심결제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심결’이란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70)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계 대표 1인(비상임)이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 심결의 의의 및 대상

다른 위원회들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사무와 구분하여 심의·의결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척·회피·기피에 있어 “심의·의결”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¹⁾ 또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있어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②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③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자본시장 관리·감독·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사전심의,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 심의를 위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심의·의결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검사, 제재, 감독, 감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관련 법령,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도 심결의 대상이 된다.

71) 금융위원회법 제13조.

<표 3-9> 금융위원회 심결의 대상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안의 제의 등) ③ 위원회 소관사무 중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4의2. 위원회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관련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금융정책·제도 및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의 심결(의결) 절차

금융위원회 회의는 ‘회의의 소집 → 의안의 제의 → 의결 → 안건의 공개’ 순서로 진행된다.

가. 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과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에 앞서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정례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금융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의안의 제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의결사항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하는 과제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⁷²⁾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관위원을 선임한다. 주관위원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의안의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의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의결서에는 의결일자, 번호, 안건명, 회의결과, 공개여부 등을 적시한다.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 회의사항 등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의사록을 작성한다. 속기록은 비공개하지만, 의사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라. 안건의 공개

안건이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건과 의사록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안건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①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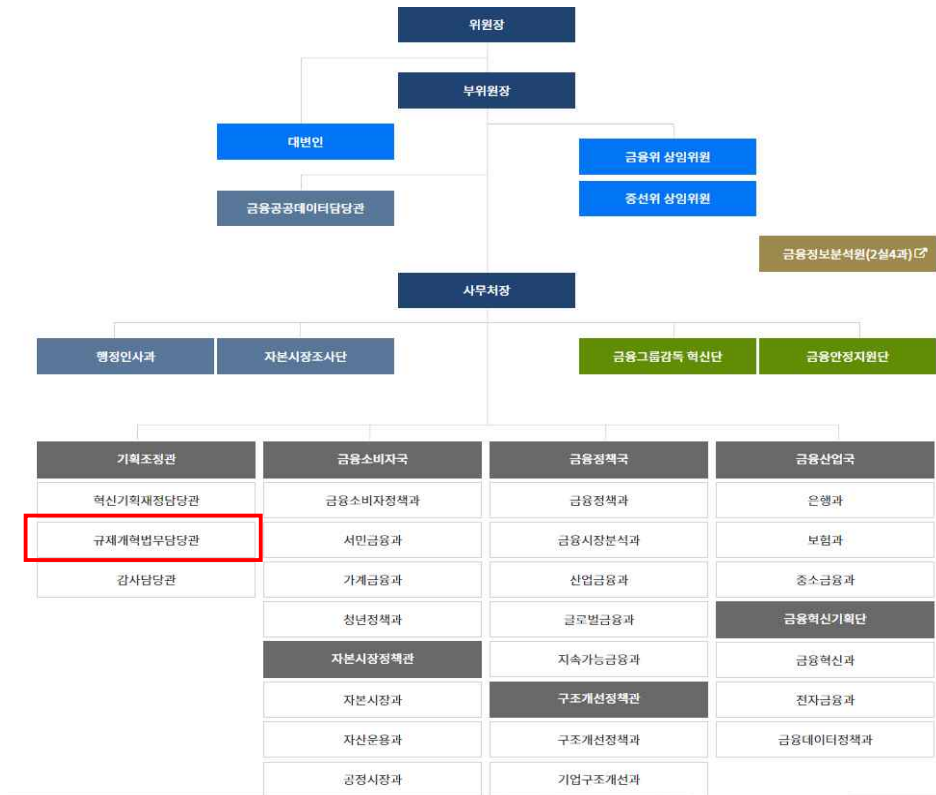
7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④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⑤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를 할 수 있다. 비공개 안건은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3. 금융위원회 심결 지원조직 현황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232명의 조직으로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같이 심결을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4] 금융위원회 조직도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안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필요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 선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표 3-10> 금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2022.4월 기준)

no.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수		
			계	당연	위촉
1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2	3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21	11	10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	14	12	2
4	시장효율화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0	7
5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법	11	4	7
6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법	7	7	0
7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9	1	8
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8	2	6
9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0	6	4
10	분담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1	6
1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4	9	15
12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10	0
13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심의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0	5

제 4 장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심결 현황

제 1 절 미국

1. 심결제도 현황

가. 심결기관으로서 연방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하 FCC)는 미국 헌법에 근거하여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FCC는 통신법을 집행하여 통신 분야의 행정적, 준입법적,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 이른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준사법절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본안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인 심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결은 조사, 심결, 청문의 순서로 진행된다.

<표 4-1> 미국 FCC 심결 등의 절차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직권조사, 민원제기 조사
심결	직권조사에 따른 심결, 비공식적 민원-공식적 민원에 따른 심결
청문	청문회의, 약식결정, 동의명령 등

나. 심결절차의 개시

FCC가 심결 등의 절차를 개시는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 등에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시작된다. FCC는 ‘COMMUNICATIONS ACT OF 1934(이하 1934통신법)’ 제 403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거나 1934통신법 제208조에 따라 개인이나 정치단체, 지방단체 또는 주위원회가 통신법을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제기한 민원을 통하여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를 개시한다.

<표 4-2> FCC의 직권조사

- ◇ 조사 방법 : 경영 조사, 연차보고서 및 그 외 보고서 제출 요구, 계약서의 사본제출, 조사결과와 관리로 구분됨
- ◇ 경영 조사(통신법 제218조) FCC는 당해 통신사업자, 직간접적으로 통신사업자를 지배하는 등의 자에 대하여 FCC의 임무 수행 및 설치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 연차보고서 등 자료 제출 요구(통신법 제219조)
- ◇ 계약서의 사본제출(통신법 제211조) 기간통신사업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 협정 또는 결정의 사본을 FCC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 ◇ 조사결과와 관리(통신법 제404조) FCC는 조사를 한 경우 결과에 대한 보고서(Reports of Investigations)를 작성 할 의무가 있음

민원에는 공식적 민원(Formal Complaint)과 비공식적 민원(Informal Complaint)이 있다. 공식적인 민원 단계 이전에 FCC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문제해결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중재하는 경우가 비공식적 민원에 해당한다.⁷³⁾ 민원당사자는 이러한 비공식적 민원의 제기에 앞서 해당 사업자와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한다. 만약 사업자와 직접적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자는 위원회에 비공식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일반절차 또는 신속처리절차(Accelerated Docket)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⁷⁴⁾ 일반절차는 아래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4-3> 일반절차(General Proceeding) - 심결절차

절차	주요 내용
일반적 청구 (General pleading requirements)	청구(Pleadings)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하며 명백하고(주장사실, 변호, 혹은 손해(damages)를 포함하여 변상에 관련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명시), 법률이나 FCC 명령 혹은 규칙의 위반을 충분히 입증

73) 민원양식 및 절차 등은 C.F.R § 1.716~ § 1.719

74) 1934통신법 제208조, C.F.R(연방규정집) § 1.720~ § 1.736

	할 사실, 위반의 주장에 대한 변호가 되기에 충분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함
소장의 서식 및 내용 (Format and content of complaints)	공식적 소장에는 각 당사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통신법, FCC의 명령, 위원회 규정의 조문이 명시(C.F.R § 1.721) - 모든 실체적 사실은 관련된 선서 진술서(relevant affidavits), 관련 서면 동의서(relevant written agreement)사본, 손해의 복구(recovery of damages) 및 손해 액수를 포함하는 원하는 구제(relief)의 내용이 명시
복수 민원제기의 병합	2이상의 원고는 소송이유(their respective causes of action)가 동일한 피고이며 동일한 사실이고 통신법 위반 혐의와 관련될 경우 하나로 병합이 가능
답변 (Answers) 제출	소장(사본)을 송달받은 통신사업자(피고)는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한 소장에 답변 - 답변서에는 제기된 주장과 논쟁(the claims and arguments)에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findings of fact), 법의 결론, 그리고 법적 분석을 포함
원고의 회신 (Replies)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는 답변서 교부 이후 3일 내에 회신 제출 - 회신은 피고의 적극적 변론에서 제시된 명백한 특정의 사실 주장과 법적 논쟁만을 다루는 내용이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관련된 실체적인 사실과 법적 논쟁에 관한 내용을 진술
재정 및 이의 신청	재정신청은 FCC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령(ORDER) 요청하는 것으로 일정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 재정신청에는 청구(pleading)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인정안(proposed findings of fact)과 법적 결론,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내용을 포함
사전 개시 절차 (Discovery)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얻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변론전(前)의 절차 - 사전개시절차를 통해 증거보전, 쟁점의 구체화 내지 명확화, 그리고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의 효율적인 정보 수집 - 사전개시절차를 강제하게 되는 재정신청에 있어서 신청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의 성실에 기한 시도(good faith attempt)가 재정신청 이전에 있었음을 증명(certification) 해야 함

절차 진행 협의 (Status Conference)	<p>FCC는 직권으로 변호사 또는 당사자들에게 위원회의 절차진행협의(status conference)에 출석하도록 지시하고 절차진행 협의는, ① 쟁점의 단순화 또는 쟁점 좁히기, ② 추가 변론(additional pleadings) 또는 증거 제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③ 분쟁 중인 문제에 관한 사실 인정(admissions) 확보, ④ 당사자 간 합의(agreement)를 통한 분쟁 사안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화해, ⑤ 사전개시절차(discovery)의 필요성, 개시 범위, 유형, 개시 일정의 확정, ⑥ 추가 절차진행협의의 일정 확정, ⑦ 기타 다른 사안들에 대해 이루어짐</p> <p>- 당사자들은 이러한 계획된 최초 절차진행협의 개최 전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2일 이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는 사전 회합을 가져야 함</p>
---------------------------------------	---

신속처리절차는 일반절차와 유사한 절차이나 상대적으로 짧은 변론기한이 인정되는 등 생략되는 절차가 있다.

<표 4-4> 신속절차

절차	주요 내용
약식 심리	FCC는 당사자들에게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약식심리(minitrial)나 청문유형의 절차(hearing-type proceeding)을 진행 - 약식심리는 보통 그 제기가 이루어진 후 40-45일 사이에 처리되며 행정법판사가 보통 약식심리와 증인 선서를 주관
결정	약식심리 후 발부된 결정은 FCC의 채택(adoption) 또는 수정을 거쳐 권고결정(a recommended decision) 형식으로 발령 - 당사자도 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FCC는 결정문 발부 이후 45일 이내에 권고결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여 결정

다. 청문

신규사업의 허가나 재허가, 신규서비스 요금의 타당성 심사, 통신사업자의 통신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 등의 절차에서 청문을 거쳐야 한다. 청문사전절차로 사실관계 및 문서 진정성 확인, 청문 전 회의, 약식결정, 동의명령 제도가 있다.

① 사실관계 및 문서 진정성 확인 : 요청서(the request) 사본 확인 및 관련 문서(documents)의 진정성(genuineness),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서면요청서(a written request)를 송달하고 출석 통지의 제출 시한이 만료된 후 20일 이내 또는 해당 절차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명령(CFR § 1.223, 1.227) 등 이후 20일 이내 청문주재관이 단축하거나 연장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청문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s) : 정식 청문이 개시되기 전에 이러한 청문전 회의를 통하여 각 당사자 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정함으로써 청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회의를 연기할 타당한 사유가 제기되지 않으면, 최초의 청문 전 회의(The initial prehearing conference)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 지정명령의 유효일로부터 30일 내(be scheduled 30 days)에 지정된다. 청문 전 회의에서는 청문에서 다루어질 쟁점들을 단순화하고, 명확화하며, 이들을 강조 혹은 제한할 필요성 내지 적절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실관계의 인정과 문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합의 가능성 여부도 검토한다.

③ 약식결정(Summary decision) : 모든 당사자는 청문에서 제기된 쟁점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적어도 청문 개시일 20일 이전에 약식결정(summary decision)을 신청할 수 있다. 약식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 혹은 부인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되며, 청문주재관의 심리를 거친 선서진술서 혹은 다른 자료를 통하여, 청문에서의 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정한 쟁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약식결정 신청이 제기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절차의 다른 당사자들은 약식결정에 대한 반론신청 혹은 재반론신청(countermotion)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동의명령(Consent orders) : 해당 당사자가 장래 당해 법률, 규칙, 지침(policies)을 준수하기로 하고 당해 청문에서 제기된 모든 쟁점을 종결짓기로 하는 당사자와 해당 국장(operating Bureau)간에 합의가 반영된 공식적인 명령(formal decree)을 의미한다. 동의명령의 합의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조사대상이 되는 모든 사실관계의 인정
- ii) 1차 결정의 준비와 재심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의 포기

- iii) 동의명령의 효력에 대한 사법심사의 권한의 포기 또는 동의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는 것을 포기하는 것
- iv) 지정명령이 동의명령을 해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진술
- v) 동의명령에 대해서 청문을 주재하는 공무원이 서명을 하여야 하고, 만일 위원회가 심사를 할 경우에는 기각당하지 않아야만, 그 합의가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 vi) 합의가 오로지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의 목적만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의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 규칙, 지침의 위반을 조금이라도 용인하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 (이하 생략)

C.F.R. § 1.311조~§ 1.325는 청문의 세부절차로 증거제시, 보존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증언조서(deposition)의 작성, 보호명령(Protective orders), 당사자에 대한 질의서(interrogatories), 서류와 물건(things)의 제출과 관련한 당사자에 대한 명령,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이 중요한 절차문제로 다루어진다.

라. 1차 결정/권고 결정

청문주재관은 절차의 각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인정 문건, 사실적 변론, 변론 요지, 선고 문안, 그 외 결론 제안(proposed conclusions)을 기초로 1차 결정(initial decision)을 내리며 이를 위원회 사무처장(Secretary of the Commission)에게 송부한다. 1차 결정에는 중요한 사실, 법의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과 그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 또는 기록에 수록된 재량 처리 사항을 포함한다.

권고 결정은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what disposition of the case)가 FCC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다. 청문주재관이 1차 결정 혹은 권고 결정을 내린 경우, 혹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결정을 위해 단지 사건을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대한 청문주재관의 권한은 종료한다.

마. 재심 및 최종결정

1차 결정의 전문 공개일 혹은 FCC가 지정한 시간 이후 30일 이내에, 어떠한 당사자라도 1차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FCC는 이의의 기각 여부를 심사하고 사실관계와 결론, 이의, 입증진술 등 FCC는 다음을 포함하여 최종결정을 내린다.

모든 사실, 법률, 혹은 기록에 나타난 재량권에 근거한 이유 혹은 그 근거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해 결정하고, 각각의 관련된 실체적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위원회는 부적절한 이의, 또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진술 없이는 결정적인 중요성이 없는 이의는 기각된다.

바. 항소

FCC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제기가 가능하다. 항소를 위해서는 10일 이내(결정일로부터)에 항소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통지서가 1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발령된 이후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위원회 직권으로 심사(reviewed) 될 수 있으며 항소에 대한 이의제기는 항소가 제기된 이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이의제기 이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은 이의제기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국한한 것이어야 한다.

2. FCC Agenda Handbook

가. 개요

FCC는 ① 안건 작성 및 ② 심결절차를 위해 내부용으로 「FCC Agenda Handbook」(이하 “핸드북”이라 함)을 발간한다. 안건은 표제부와 결정문으로 구성되는데, 핸드북은 각각의 작성 방법과 세부형식(표지, 내용, 목차, 분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표제문(cover memo)은 권고된 조치를 간단히 요약하고, 결정문에 의하여 제기된 주요 쟁점들을 강조하며, 필요한 행정자원 영향(administrative resource impact) 정보를 제시한다. 또한 결정문(decision paper)은 대중들에게 알리는 위원회의 결정과 기본적인 판시 이유를 설명한다.

나. 안건의 처리

안건은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람)으로 처리된다. 의제회의안건(agenda meeting items)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표결(대면결의)되는 안건이며, 회람안건(circulation items)은 서면

으로 표결(서면결의)되는 안건이다. 각 유형에 따라 절차(준비, 승인, 공포 등)에 대한 규칙이 제시되며 Office of Managing Director, Office of the Secretary에서 발간한다.

다. FCC Agenda Handbook 목차

핸드북은 크게 용어해설, 위원회의 결정문 준비, 표제문 준비, 결정문의 승인, 결정문의 인쇄와 공포로 구성되어 있다.

<표 4-5> FCC Agenda Handbook 목차

<p>I. GLOSSARY II. PART 1 - PREPARING A DECISION DOCUMENT A. GENERAL GUIDELINES FOR WRITING A DECISION DOCUMENT B. LENGTH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iscussion 4. Conclusion 5. Procedural Matters 6. Ordering Clauses and Effective Date C. FORMAT 1. Caption 2. Table of Contents 3. Introduction 4. Executive Summary 5. Background 6. Discussion 7. Conclusion 8. Procedural Matters a. Ex Parte b. Regulatory Flexibility c. Paperwork Reduction Act d. Contract With America Advancement Act e. Notice and Comment Provision f. Union Notification 9. Ordering Clause 10. Terminating a Proceeding (Ordering</p>	<p>I. 용어 해설 II. PART I - 위원회 결정문 준비 A. 결정문 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B. 결정문의 길이 1. 도입부 2. 배경 3. 논의 4. 결론 5. 절차상 문제 6. 명령 조항과 발효일 C. 결정문의 형식 1. 캡션 2. 목차 3. 도입부 4. 핵심 요약문 5. 배경 6. 논의 7. 결론 8. 절차상 문제 a. 편면적 진술 b. 규제유연성법 c. 문서감축법 d. 1996년 미국과의 계약개선법 e. 통지 및 코멘트 조항 f. 노조 통지 9. 명령 조항</p>
---	---

<p>Claus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Effective Date (Ordering Clause) 12. FCC Contact 13. FCC Secretary' s Signature 14. Appendix 15. Footnotes <p>III. PART 2 - PREPARING THE COVER MEMO FOR A DECISION DOCUMEN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Purpose B. Length C. Market-Sensitive Information D. Identifying Information E. Specific Sections To Be Include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dministrative Resource Impact 2. National Security/Emergency Preparedness 3. International Coordination 4. Congressional Or Press Relations Issues 5. Initiating Document And Party 6. Legal Counsel 7. Summary 8. Issue Analysis 9. Effective Date 10. Related Matters 11. Practical Impact 12. Overall Recommendation 13. Coordination and Notation 14. Author' s Name 15. Signatures <p>IV. PART 3 - APPROVAL OF DECISION DOCUMEN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Agenda Meeting Item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ordination of Draft Meeting Items 2. Distribution of Items for Open Meeting 3. Distribution of Items for Closed Meeting 4. Pre-adoption Editing Process and Redistribution of Meeting Items 5. Withdrawn Items 6. Other Required Preparation for Meet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Sunshine Summa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절차의 종결 (명령 조항) 11. 발효일 (명령 조항) 12. FCC 연락처정보 13. FCC 사무처장의 서명 14. 부록 15. 각주 <p>III. PART 2 - 결정문의 표제문 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목적 B. 길이 C. 시장에 민감한 정보 D. 식별 정보 E.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섹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 자원 영향 2. 국가 안보/긴급사태 대비 태세 3. 국제조율 4. 의회 또는 보도 관계 쟁점 5. 개시 문서 또는 개시 당사자 6. 법률자문 7. 요약 8. 쟁점 분석 9. 발효일 10. 관련 문제 11. 실용적 영향 12. 종합적인 권고 13. 조율과 표기(notation) 14. 작성자의 이름 15. 서명 <p>IV. PART 3 - 결정문의 승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의제 회의 안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안건 초안의 조율 2. 공개 회의를 위한 안건 배포 3. 비공개 회의를 위한 안건의 배포 4. 회의 안건에 대한 채택 전 수정 절차와 재배포 5. 철회한 안건 6. 회의를 위한 기타 필요 준비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선샤인 요약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Sunshine Notice c. Presentations and Press Releases d. Name Cards 7. Strategic Information Office(SIO) Checklist 8. After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Vote b. Statement c. Adopted Version d. Non-Substantive Edits e. Substantive Edits f. Release Target Date g. Bureau Agenda Release Form ("BARF") (Form A-501) B. Circulation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ordination 2. Distribution of Circulation Items 3. Commission Voting on Circulation Items 4. WIP (Work in Progress) List 5. Emergency/Time Sensitive Circulation Items 6. Revised Circulation Items 7. Adoption of Circulation Items C. Special I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Executive Circulates 2. Reorganization Items 3. By Direction Letters 4. Federal-State Joint Board 5. En Banc Hearings V. PART 4 - PRINTING AND RELEASE OF DECISION DOC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elease Procedures B. Printing DocuTech Printing C. Federal Register Publication D. Printing/Publication in FCC Record E. Errat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선사인 통지 c. 발표와 보도자료 d. 이름표 7. 전략정보실(SIO) 점검표 8. 회의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표결 b. 성명 c. 채택본 d. 내용과 관련없는 수정 e. 내용의 수정 f. 공표 목표일 g. 사무국 의제 공표 서식("BARF") (서식 A-501) B. 회람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율 2. 회람 안건의 배포 3. 회람 안건의 위원회 표결 4. WIP(진행중인 업무) 목록 5. 긴급한/시간에 민감한 회람 안건 6. 개정된 회람 안건 7. 회람 안건의 채택 C. 특별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 회람물 2. 재구성 안건 3. 지시서신을 통하여 4. 연방-주 공동 위원회 5. 전원참석 청문회 V.PART 4 - 결정문의 인쇄와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사무처장실/미디어관계실의 공표 절차 B. 인쇄 C. 연방관보 간행 D. FCC 기록에 인쇄/게재 E. 정오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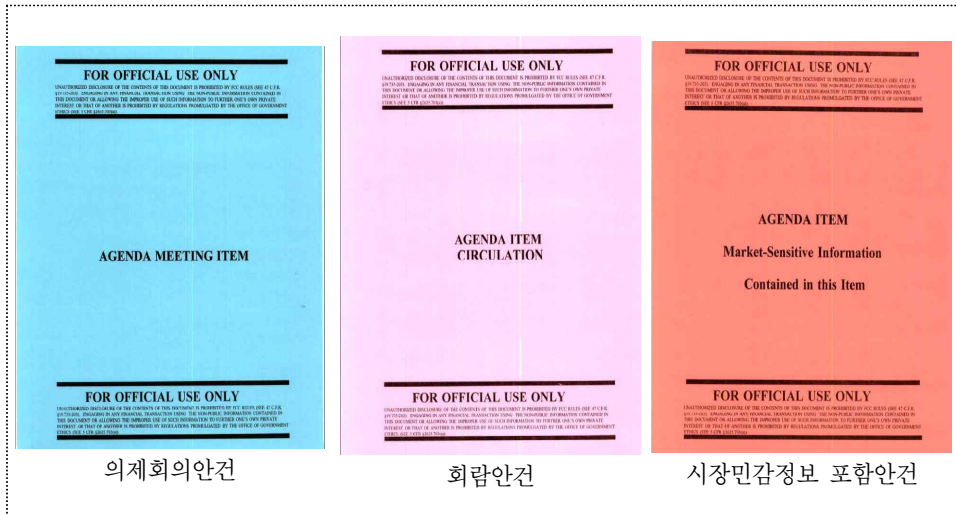
라. 포맷 제시

- ① 안건 작성

안건(표제문, 결정문) 작성 시 따라야 할 내용적·형식적 측면의 방법 및 구체적인 포맷을 제시한다.

표제문은 3~4쪽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하며,⁷⁵⁾ 시장에 민감한 정보를 다룬 안건일 경우 이를 표제문 및 표지에 표시한다. 시장에 민감하다고 지정한 모든 안건들은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한 안건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의제회의안건(위원회 회의를 통한 대면결의), 회람안건(서면결의), 시장에 민감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안건을 구분하여 표지 색상을 달리한다. 표제문에는 식별정보, 행정지원영향, 국가안보/ 긴급사태, 대비 태세, 국제조율, 의회 또는 보도관계 쟁점, 개시 문서 또는 개시 당사자, 법률자문, 요약, 쟁점 분석, 발효일, 관련 문제, 실용적 영향, 종합적인 권고, 조율과 표기, 작성자의 이름, 서명 등을 기재한다.

[그림 4-1] 안건의 표지



<표 4-6> 표제문의 세부구성

구분	조치
식별정보	• 번호, 의제유형, 회의일, 회의유형, 날짜, 발신인, 제목

75) 결정문이 6~10쪽인 경우 3쪽 이내, 더 긴 결정문은 4쪽 이내

구분	조치
행정자원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행정적·자원적 결과를 알리기 위해 행정자원영향(ARI) 성명이 요구됨 • 업무량, 직원 수준, 인사와 관련 없는 비용(계약 서비스 등), 자동화(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등), 업무 보조(장소, 설비, 보급, 이동 등), 일반대중에게 부과되는 문서 부담, 요금에 대한 영향
국가 안보/긴급사태 대비 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와 집행국장에게 안전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긴급사태 대비 태세에 대한 영향을 알리기 위해 국가안보/긴급사태(NS/EP) 성명이 요구됨 • 방위 관련, 재해 관리, 기타 NS/EP 전기통신 기능의 영향
국제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안전이 국제국(IB)과 조율을 거쳤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국제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안전에 국제조율(IC) 성명이 요구됨 • 제안된 조치가 갖는 국제적 의의를 위원회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안전의 배포 전에 국제국은 표제문에 추가할 문구를 제공
의회 또는 보도관계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계류 중인 입법 또는 의회 서신은 이 부분에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를 위해 보도 관계에 대해 예견되는 영향 또한 포함되어야 함 • 사무국/사무실과 보도 전략을 조율하라고 미디어관계실에 알리는 역할
개시 문서 또는 개시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한 당사자를 밝히고(NAB, NCTA, 등), 가능하다면 개시 문서도 밝혀야 함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절차를 다루는 안전은 당사자와 그 법률자문을 밝혀야 함 • 위원회의 기피(忌避) 결정에 도움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조치 내용, 필요성, 타당성 등 권고조치 내용을 짧게 요약
쟁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쪽 이상의 안전일 경우 쟁점 분석 작성

구분	조치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문에서 결정문이 발효되기 전에 의회나 노조의 승인을 요하는 위원회 재구성을 제안할 경우, 안건이 1996년 미국과의 계약 개선법상의 “중요한 규칙”을 부과할 경우, 여기에 관련 내용 추가 규칙을 개정하는 모든 명령은 발효일을 적시해야 함
관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관련된 계류 중인 FCC 소송, FCC 규제조치, 절차를 별도로 인용해야 함
실용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점 분석에서 잘 안 드러난 경우, 조치의 영향이 중요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인용해야 함
종합적인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는 매우 간결해야 하며, 조치 이유를 설명해야 함
조율과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은 위원들에게 회람되기 전에 법률자문실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사무국/사무실과 완벽하게 조율 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무국/사무실에서 이를 안건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록
작성자의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자의 성명, 전화번호, 방 번호를 안건의 마지막 장에 포함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안 및 관련 사무국/사무실 기관장의 서명을 표제문 마지막 장에 포함

결정문은 내용적 측면에서 작성자의 태도 및 작성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형식적 측면에서 결정문의 목차 등 세부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4-7> 결정문 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 | |
|---|
| <p>① 작성하기 전에 생각하고 작성하는 동안에도 생각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목표가 무엇이며 안건의 결정이 정책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어떻게 합리적, 적법, 명확하게 안건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인지 등 <p>② 독립적으로 생각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들의 주장과 해석에 제한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쟁점을 생각하여 위원회와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파악 <p>③ 주장을 분명히,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전개하라</p> |
|---|

-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작성
- ④ 어려운 쟁점들은 직접적으로 다루어라
 - 답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얼버무리지 말고,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한 우려들을 예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
- ⑤ 작성하고 난 후 다시 생각하라
 - 작성본을 타인의 입장에서 읽고 재고

<표 4-8> 결정문의 세부 구성

안건의 구성 (목차)	주요 내용 및 형식
캡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C 번호 [안건이 채택된 후 의제 그룹이 부여한 번호] • 문서의 공식 제목 • 제목의 오른쪽에 사건명부번호, 규칙제정번호, 파일번호 • 채택일, 코멘트일, 코멘트답변일 • “위원회에 의하여:” 라는 문구, 위원들에 의한 모든 성명에 대한 반대, 동의, 불참, 성명 발행을 나타내는 성명
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쪽 이상의 모든 안건에는 목차를 포함시켜야 함
도입부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위원회의 결정 앞에 놓이게 된 것 즉, 안건의 대상을 평이한 말로 간단하게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급된 쟁점들에 대한 간결한 성명 - 취해진 조치에 대한 간결한 성명 및 조치의 근거 • (분량) 1문단, 4~5문장, 4분의 1쪽
핵심요약문 executive summ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히 긴 안건이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핵심 요약문 부분이 제공되어야 함
배경 Back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어떻게 위원회가 그 결정에 도달하였는지, 진행된 절차의 간단한 변천사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에서 예전에 채택된 위원회의 안건, 제기된 모든 중요한 신청, 법조항들, 관련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한 짧은 설명 제공 • (분량) 2문단, 각각 4~5문장, 2분의 1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신청 및 항변은 추가 2문단 이내로 간단히 요약하고, 항변에서 제기된 중요 주장의 분석과 그에 대한 응답은 논의 부분에 통합되어야 함
논의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독자가 전문가라고 가정하지 말고, 확실하며 상식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함. 각 쟁점에 대해 견고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안건의 구성 (목차)	주요 내용 및 형식
	<p>하며, 특히 항소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제정안의 통지(NPRM) : 제안된 규칙의 조항이나 실제적 내용 또는 관련 주제와 쟁점에 대한 설명을 기술 - 규칙제정명령 : 각 결정에 대하여, 특히나 그 결정이 NPRM에서의 제안과 다르거나 일부 코멘트를 한 사람에 의해 반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정들의 이유와 기록 지원을 설명 - 규칙비제정명령 : 특히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절차 당사자가 있는 경우, 이루어진 각 결정의 이유와 기록 지원을 설명 - 제목과 소제목 사용 - 법적 선례 인용 • (분량) 절차에서 제기된 쟁점의 숫자와 그 복잡함에 따라 결정 - 전형적인 안건은 5 ~ 10쪽, 좀 더 복잡한 안건은 10 ~ 25쪽, 이례적으로 복잡한 안건은 25쪽 이상
<p>결론 Conclu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명령 조항 앞의 별도의 섹션에 놓아야 함 - 10쪽 이상의 안건은, 설명적인 결론을 작성하여 독자들이 안건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확히 알게 함 - 10쪽 이하의 짧은 안건은,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또는 “따라서” 등과 같이 결론임을 나타내는 “신호”가 되는 말을 사용 • (분량) 길이 : 1문단, 4 ~ 5문장, 4분의 1쪽
<p>절차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모든 절차적 문제를 하나의 섹션에 모아 별도의 소제목을 부여하고, 명령 조항과 사무처장의 서명 바로 앞 안건의 말미에 놓거나, 한 쪽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부록에 둠 - 편면적 진술, 규제유연성법, 문서감축법, 미국과의 계약개선법, 통지 및 코멘트 조항 등과 관련된 절차 또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 (분량) 1쪽, 또는 더 긴 경우 부록으로 놓음
<p>(필요 시)</p>	
<p>명령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서 조치를 명령할 경우, 알맞은 명령 조항을 결론 섹션과 별도로 그 바로 뒤에 포함시켜야 함
<p>절차의 종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가 실행되어 절차가 종결된 경우, 명령 조항에 절차의 종결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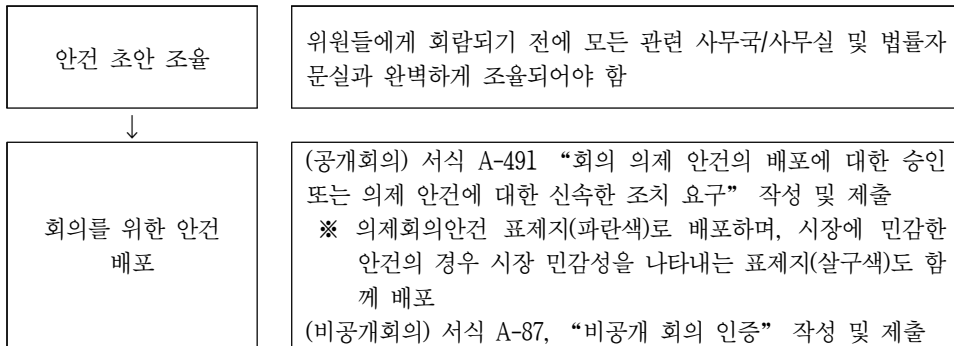
안건의 구성 (목차)		주요 내용 및 형식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령 조항은 규칙 개정과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의 발효일이 포함되어야 함
FCC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관련 추가 정보를 위해 위원회 담당 직원의 이름, 사무국/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FCC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사무처장의 서명으로 문서를 마감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1쪽보다 긴 개정 규칙과 절차적 문제 제시를 위해 사용 (분량) 최대한 간결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걸치레나 지침서와 같은 부록은 삼가야 함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본문 진술을 문서로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안건에서 한 모든 중요한 진술의 기초가 되는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본문에서 실질적이지 않은 세부사항이나 인용을 없애기 위해 등의 목적으로 각주 사용 (분량) 최대한 간결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한 각주 없이 본문에서 내용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며, 중요한 실질적인 자료는 각주가 아닌 본문에 두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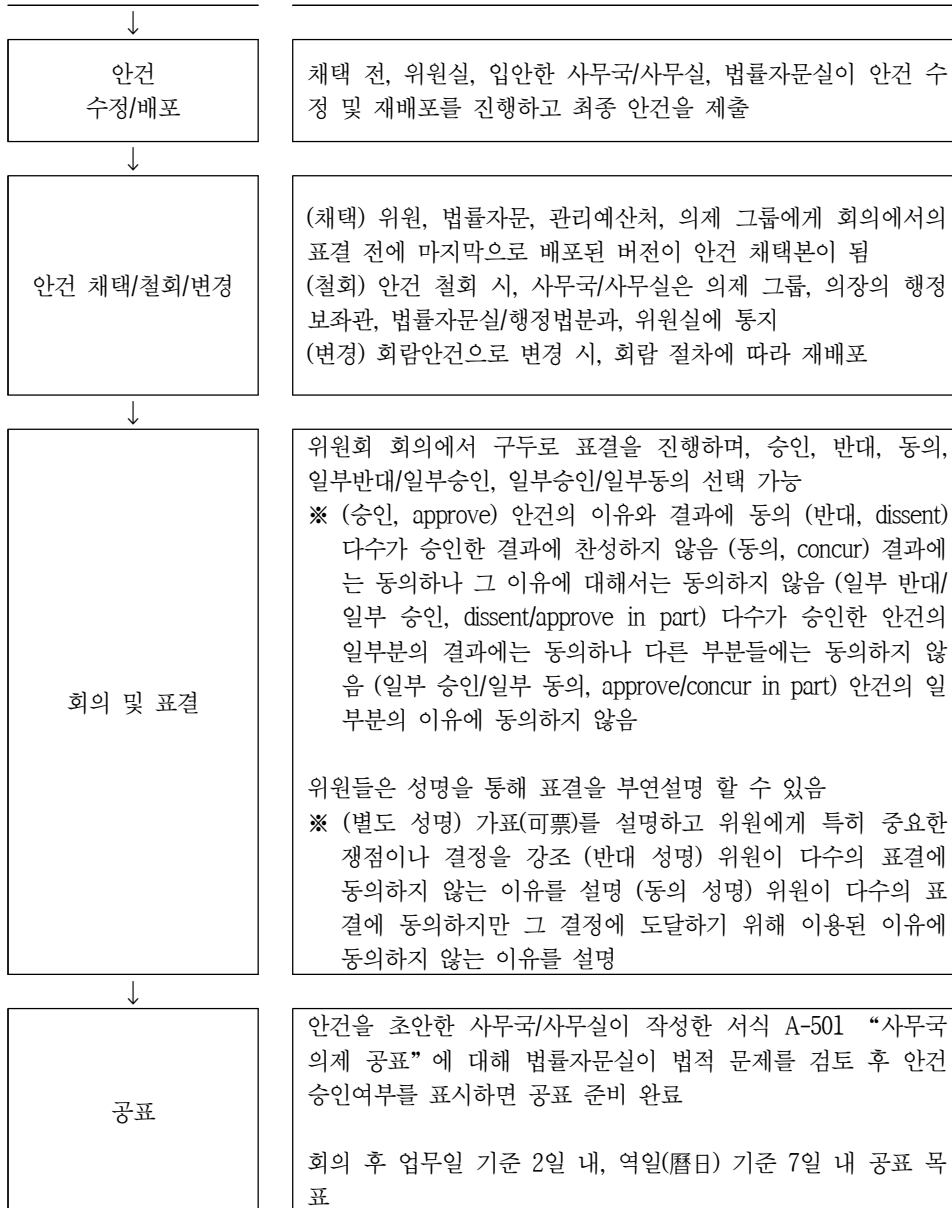
② 심결절차

핸드북은 의제회의안건(대면결의)과 회람안건(서면결의) 각각의 승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의제회의안건은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표결을 진행하여 처리한다. 승인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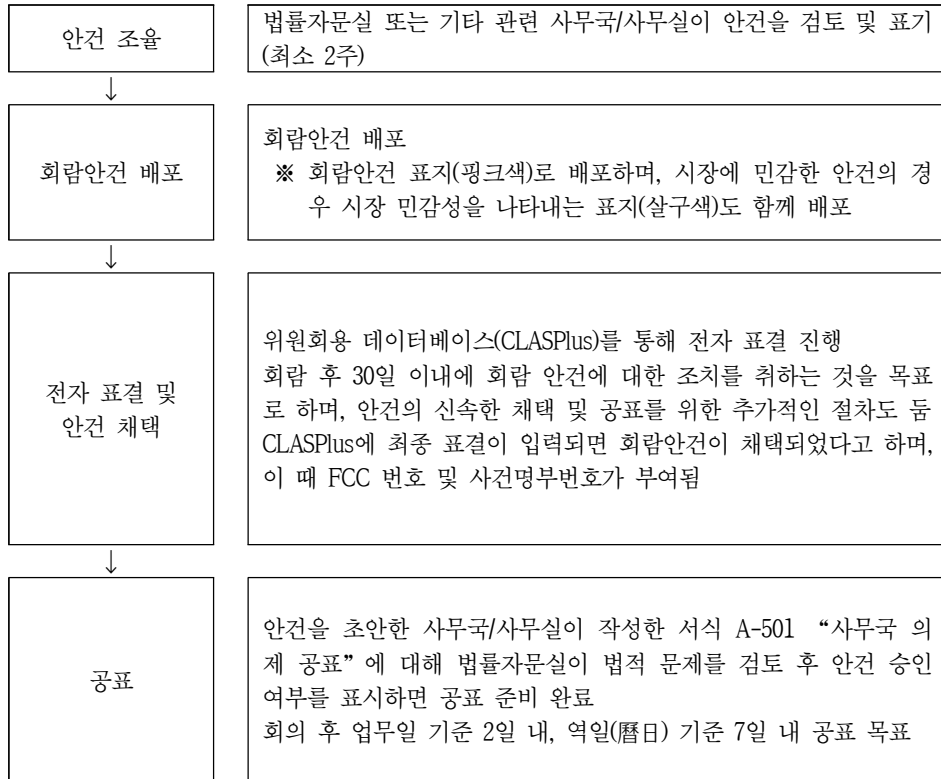
<표 4-9> 의제회의안건(대면결의) 승인 절차





회람안건은 위원회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자 표결을 진행하여 처리한다. 승인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0> 의제회의안건(대면결의) 승인 절차



제2절 독일

1. 연방네트워크규제청(Bundesnetzagentur; 이하 BNetzA) 내 결정위원회

독일의 연방네트워크규제청(Bundesnetzagentur; 이하 BNetzA)은 통신과 체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표 하에 시장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2021.6.23.개정) 제211조⁷⁶⁾에 따라 행정절차에서의 결정은 BNetzA에 소속된 ‘결정위원회(Beschlusskammern)’가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고 있다. 그 대상은 시장 규제 및 주파수 이용(할당, 임대 등) 관련 사항이다. 통신법 파트2 시장규제(Teil 2 Marktregulierung § 10 ~ § 50), 제91조(9)항(§ 91 Frequenzzuteilung), 제100조(§ 100 Vergabeverfahren), 제101조(§ 101 Flexibilisierung der Frequenznutzung)가 이에 해당한다.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위원회는 의장 1인 및 준회원 2인이 함께 결정을 내리는데, 이들 모두 고위공무원 경력을 가져야 하고⁷⁷⁾, 구성원 중 최소 1명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현재 분야별(통신, 우편, 주파수, 철도, 전기, 가스 등) 총 11개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⁷⁸⁾

<표 4-11> 독일 결정위원회 현황

구분(개)	소속 위원회
주위원회(1)	◇결정위원회1 : 통신망, 우편 및 주파수 관리 관련 사항
통신(3)	◇결정위원회2 : 전화 요금 규제 및 모욕 관행 전화서비스에 있어서 최종시장, 전화선 임대에 대한 선행 그리고 최종시장, 공중전화에 대한 선행 그리고 최종시장의 결정

76) 독일통신법 § 211 Beschlusskammerentscheidungen(결정위원회의 결정)

77) 독일통신법 § 211 ③ Der oder die Vorsitzende und die beisitzenden Mitglieder müssen die Befähigung für eine Laufbahn des höheren Dienstes erworben haben

78) <http://bundesnetzagentur.de/DE/Beschlusskammern/BK.html>

	◇결정위원회3 : 유무선망 서비스의 도매통신시장 규제 ◇결정위원회11 : 독일디지털망법(DigiNetzG)상의 국가 분쟁 조정 기구
전기·가스(5)	◇결정위원회4 ◇결정위원회6 ◇결정위원회7 ◇결정위원회8 ◇결정위원회9
우편(1)	◇결정위원회5
철도(1)	◇결정위원회10

2. 결정위원회의 심결절차

가. 심결절차의 개시

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심결절차를 개시한다.⁷⁹⁾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공적 준칙(Offizialmaxime)⁸⁰⁾이 적용된다. 신청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사인의 행위, 행정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문 및 구술심리

결정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청회(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한다.⁸¹⁾

다. 절차의 종결

결정 또는 그 밖의 방식에 따른 절차종결, 송달, 결정의 효과 등 결정위원회 절차 종료는 통신법 제209조에 규정하고 있다. 통신법은 행정절차법상의 ‘고지’가 아닌 결정의 ‘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BNetzA의 규제 결정은 원칙적으로 송달을 통하여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한다. BNetzA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적 조치(소송 등)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써 BNetzA에 의한 행정행위의 실행가능성은 강하게 담보된다.

79) 독일통신법 제213조, 직권(von Amts wegen, 번역하면 ex officio) 또는 신청(auf Antrag ein, 번역하면 upon request)

80) 결정위원회의 의무에 포함된 사항을 의미한다.

81) 통신법 제215조.

제3절 유럽

1. 유럽연합 내 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행정부 역할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각종 법령·정책을 입안 및 집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Commissioner) 26명(국가 당 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 33개의 총국(Directorate General, DG)에서 해당 분야별 집행위원을 보좌한다. 총국에는 방송통신 분야를 다루는 정보통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DG CONNECT), 다양한 분야의 경쟁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DG COMP) 등이 있다.

<표 4-12> 집행위원회(EC)의 책임 및 권한

정책·법안의 제안 및 개발	EU 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 정책 개발 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 개입 ※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이행할 의무
행정기능	EU의 재정관리(EU 5대 기금 관리·운영) 회원국 정부, 기업, 개인이 EU 공동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EU법의 수호	EU법이 공동체 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대표 및 협상자	이사회에 위임에 따라 EU를 대표하여 외국과 대외 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짐 ※ 유럽대외관계청(EEAS) 신설로 대외적 대표 기능은 다소 축소
긴급 조치 조항 운영권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 강구

자료 : 2020 EU 개황(2020.6, 외교부), 재구성

집행위원회는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포함한 집행 권한을 가진다.⁸²⁾ 집행위원회의 경쟁 담당 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경쟁총국(DG COMP)에서 관할하며, 경쟁 총국 내 9개 세부 조직 중 ‘정보통신미디어 분야(Information, Communication & Media)’가 존재한다. ICT 분야는 유럽의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전략, 2020 경제 전략 등의 핵심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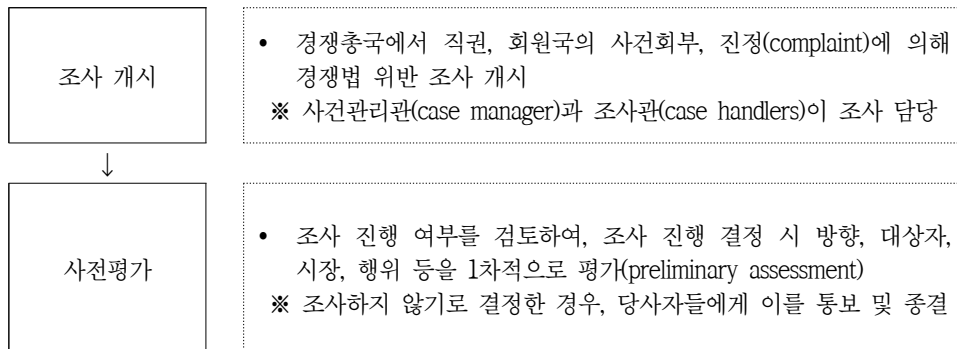
경쟁총국은 사업자들이 EU 경쟁법을 준수하도록 정보산업, 소비자기기, 인터넷, 미디어 등의 분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반독점(antitrust), 카르텔(cartel), 합병(merge), 국고보조(state aid) 등의 사안을 조사 및 규제한다.

2. 집행위원회의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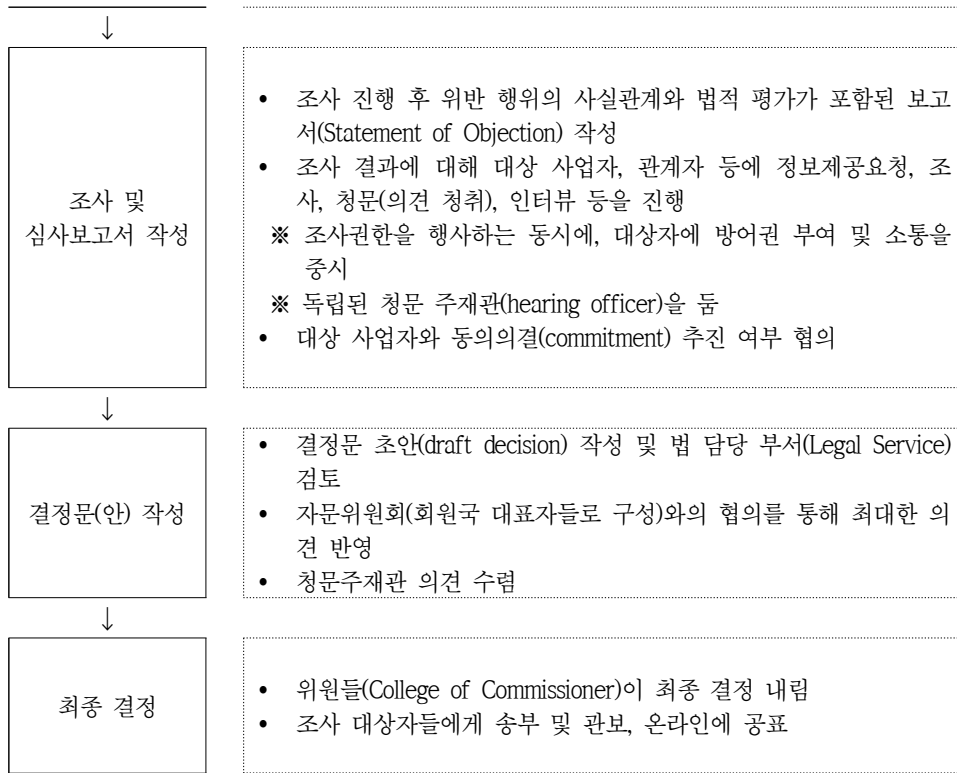
가.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절차

집행위원회에서 경쟁법 관련 규제를 위한 집행절차는 조사개시, 사전평가,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결정문 작성, 최종 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표 4-13> 집행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절차



82)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근거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등

나. 제재조치 결정

위반 사안 발생 시 시정조치, 임시조치, 동의를결, 과징금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이때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위원회⁸³⁾와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해야 한다.

83) 제한적 관행 및 지배적 지위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trictive Practices and Dominant Positions)

<표 4-14> 집행위원회 및 집행당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Decision)

시정조치 (termination)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
임시조치 (Interim measures)	경쟁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명령
동의를결 (Commitments)	시정조치 결정을 채택하고자 할 때 관련 사업자가 사전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 최종 결정 전 언제든 사업자는 집행위원회와 동의를결 절차에 대해 논의 가능
과징금 (Fines)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부과

자료 :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동의를결은 사업자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받아들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종결정 전에 언제든 사업자는 동의를결 절차에 대해 논의가 가능한데, 심사보고서 송부 전 동의를결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와 심사보고서 송부 후 동의를결 진행 전달 시의 절차가 차이가 있다.

<표 4-15> 동의를결 진행 절차

① 심사보고서 송부 전 동의를결 진행 의사 전달 시 : 사전평가 → 동의를결 협의 → 사전평가서 송부 → 시정방안 제출 → 수락 결정 → 관련 제3자 의견수렴(market test) → (필요 시) 시정방안 수정 및 추가 의견수렴 → 최종 결정 → 온라인 공고
② 심사보고서 송부 후 동의를결 진행 의사 전달 시 : 사전평가 → 심사보고서 송부 → 동의를결 협의 → 시정방안 제출 → 이후 동일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European Union, CJEU)에 항소 가능하다. 각 회원국 또한 집행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집행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거나 결정을 내릴 경우 집행위원회에 통보

해야 한다. 단,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 최근 동향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추진 중으로, 집행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시장조사 및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불법상품 및 거짓정보의 유통,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 등에 대처하고자 새로운 법제를 추진한 것이다.

유럽 내 전자상거래 제공 주체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무와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감독 기능과 법 집행 기능을 크게 강화할 목적이다. 디지털시장법⁸⁴⁾은 시장 조사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의무 부과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권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⁸⁵⁾은 불법·유해 상품 및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의 의무사항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담 조직으로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보통신총국(DG CONNECT, 집행)으로 결정되었다.⁸⁶⁾

84) 3자회의(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법안 제정 합의(2022.3.24.) 회원국 및 의회 승인 후 2023년 초 시행 전망

85) 3자회의에서 법안 제정 합의(2022.4.23.), 회원국 및 의회 승인 후 대형 플랫폼은 4개월 후, 그 외 사업자들은 1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

86) 그간 경제통화위원회(ECON) 및 경쟁총국(DG COMP)과 관할 관련 갈등이 있었다.

제5장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안

제1절 시사점

1. 국내 심결제도 비교

가. 각 심결 제도 비교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합의회 기관들은 심결대상, 심결절차, 심결지원 조직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각 위원회별 심결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 위원회별 심결제도 비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구성	5인 상임	9인 (5인 상임)	9인 (2인 상임)	9인 (4인 당연직)
심결대상	업무전반 (정책, 사전규제, 사후규제)	법 위반행위	업무전반 (개인정보 정책, 의견조정, 사후규제)	업무일부 (검사/제재/감독, 소관 법령/규칙)
대심구조	弱	엄격	弱	완화
심의절차	인지 → 실태점검 → 사실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안 작성 → 안전 심의의결 → 의결서 작성통지	인지 및 예비조사 → 본조사 및 심사 → 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결과 통지 및 처리	신청 → 대상 여부 검토 → 안전 검토 → 안전상정 → 심의·의결 → 종결	소집 → 의안제의 → 심의·의결 →
심결공개	전부 공개 회의록/속기록 공개	공개 합의는 비공개	전부 공개 회의록/속기록 공개	의결서/의사록 공개
소회의제도	X	소회의	소위원회	소위원회 (의안 사전검토)
심결지원 조직	행정법무담당관 이용자정책총괄과 (전담기구 X)	심판관리관 (위원장 소속 독립기구)	심판총괄담당관 (회의운영담당) 조사조정국 (안전 조사 담당)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전담기구X) 소관위원회 등

나. 심결 범위의 차이

심결 대상 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매우 유사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권만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인허가권을 포함한 포괄적 사전 규제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심결의 범위 역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법 위반에 대한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계획부터 법령 관련 사항, 주파수 관련 사항 등 다양한 주요 업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사전규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에 대해서 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다.⁸⁷⁾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과정에 이어 준사법적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에 표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비교해 대심적 구조가 약한 편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범위의 차이에 기인하여 제도 설계 시부터 대심적 구조가 강조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적절한 대심적 구조를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다. 심결 지원 조직

상대적으로 심결을 중요하게 제도화하지 않은 금융위원회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심결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결을 총괄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지원 기능을 하는 전담 조직을 위원장 직속으로 두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고, 분쟁에 대한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심결을 전담하는 지원 조직을 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87) 주지홍,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심결에 대해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국에서 조사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전담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지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등 다양한 소관위원회를 두어 개별적 의결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심결을 총괄·관리하고 법률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법무담당관 내 일부 인력이 위원회 운영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이용자총괄과에서 금지행위 관련 총괄 성격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분야별 조사 및 제재조치 등은 각 과에서 이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이며, 방송통신이용자에 대해 중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심결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소회의 제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회의와 함께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결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사전검토이긴 하지만 소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심결에 의해 모든 심결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금지행위위반 관련 사건 중 반복성을 띠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회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회의 내지 주심제도에 대한 도입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검토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심제도 내지 소위원회를 심결의 효율성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 복잡·다변하는 방송통신에 대한 대응

방송통신 기술 발전 및 서비스와 콘텐츠의 진화로 심결 안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다방면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방송통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결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심의의결을 총괄·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심결 지원 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심결 안전에 대한 전략적, 전문적, 선제적 대응을 하고 증가하는 심결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결의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이슈에 따라 심의의결서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를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안,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표 5-2> 심의의결서 포맷 비교

방송광고 판매대행 금지행위 안전번호 제2020-33-152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안전번호 제2021-59-231호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안전번호 제2020-49-230호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전번호	안전번호 (사건번호)	안전번호
안전명	안전명	안전명
피심인	피심인	피심인
의결일	의결연월일	의결연월일
주문 1,2,3, ...	주문 1,2,3	주문 1,2,3,...
이유 1. 일반현황 2. 사실조사결과 가. 조사대상 나. 행위사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나. 위법성판단 4. 시정조치명령	이유 1. 사실조사 현황 가. 조사경위 및 대상 나. 행위사실 2. 처분규정 및 위법성판단 가. 처분규정 나. 위법성판단 3.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이유 I.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반현황 2. 조사경위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현장조사 현황 3. 행위사실 1)전체 조사결과

가. 금지행위의 중지 나. 업무처리절차 개선 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5.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나. 기준금액 다. 필수적 조정 라. 추가적 조정 마. 초과감정 바. 과징금의 결정 6. 결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위원장 및 위원 (인)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과태료 부과 가. 기준금액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다. 최종 과태료 5. 결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날짜 위원장 및 위원 (인)	2)오프라인 조사결과 3)온라인 조사결과 4)본사 조사결과 III. 행위사실의 위법성 1. 관련법 규정 2. 위법성 판단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V. 과징금 부과 1. 부과 기준금액 2. 필수적 가중·감경 3. 추가적 가중·감경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VI. 형사고발 판단 VII. 결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날짜 위원장 및 위원(인)
--	--	--

2. 해외 심결제도의 시사점

미국의 FCC는 심결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절차 뿐 아니라 신속처리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심결에 있어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면서 청문의 사전절차로 사실관계 및 문서의 진정성확인, 청문 전 회의(사전조율), 약식결정 신청, 동의명령 제도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에서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FCC Agenda Handbook을 마련하여 심결의 작성 방법과 세부 형식, 권고된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핸드북에서 주요 내용과 형식을 정해줌에 따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우 심결절차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을 부여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집행위원회도 동의를결 제도를 두고 있으며, 최종결정 전에 언제든지 동의를결 절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감독 기능과 법 집행 기능의 강화 움직임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대처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준다.

제 2절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심결제도 개선사항

1. 대심적 구조의 확보

가. 증거자료의 적절성 확보

심결을 진행함에 사업자들이 낸 1차 자료들을 가공해서 요약본으로 첨부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이러한 요약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 요약본 등 가공된 자료는 형사·민사·행정상 별도의 증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일관성 있는 증거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결 총괄부서는 통합적으로 증거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증거 보전 관련 예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증거에 대해 피조사자의 확인 절차(진술서 형식으로 피조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요약서를 만드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들의 1차 자료 접속 권한을 강화하여 증거의 적절성 증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증거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심인의 권한 강화 ① 의견청취의 제도적 보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은 사건의 인지부터 조사, 심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1차적 처분 절차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역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불이익처분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적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처분 절차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심결절차는 피조사자나 피심인의 의견청취를 정하면서도 재량적 성격이 강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사전준비절차에 있어 피심인이 구술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가 없고, 문서로 받아 이를 요약정리본과 함께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있다.

<표 5-3> 심결제도에서의 의견청취 제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①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늦어도 의견진술지정일 10일(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5일) 이전까지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심인이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결절차를 구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면 ① 실태점검 시의 방어권 보장, ② 위법성 판단 시(조사, 심리)의 법률의견제출권, ③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조사의 전단계인 실태조사 시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현재 없다. 따라서 실태점검시 재량권 행사에 의해 사업자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②의 경우 위원회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재량의 범위에 해당한다. ③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심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결일에 반드시 피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듣는 출석권 형태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10일의 준비기간은 상당히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은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 절차적으로 보다 명확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사실조사 전 실태점검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통지절차 시 의견 제출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 피조사인의 법률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기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조사자·피심인에게 의견 청취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공하고 담당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인식개선과 절차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경우는 전 과정에서 피조사인 내지 피심인의 의견진술을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구술심리가 인정되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를 i) 구술심리 후 처리해야 할 안전과 ii) 구술심리 없이 처리가 가능한 안전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실태점검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조사 전의 해당 소속 실·국의 조사에 대해 실태점검 통지 시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지행위와 관련이 없는 실태점검을 명목으로 과도한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 대해 임의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7조)은 이해관계인 등이 임의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범문화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다. 조사받는 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조사받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권은 출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의견제출에 필요한 자료제공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간은 10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연장기간을 10일, 4주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비합리적이다.

다. 피심인의 권한 강화 ② 변호인의 참여제한 완화

심결절차에 있어 조사관은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과정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많다는 점은 문제이다.

<표 5-4> 심결제도에서의 변호인 참여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p>제7조(변호인의 참여) ①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관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p>

심결에서의 대심구조를 구축하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은 중요하다. 또한 심결에 있어 조사 담당자가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변협 지침, 경찰 수칙, 관련 판례 등)를 고려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피조사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통하여 방통위 심결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디지털 방식 도입 강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방식의 대응이 더 빈번히 요구되고 있으나 화상회의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규정, 시설장비,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관련 규정은 개략적으로만 마련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화상회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상태이다.

<표 5-5> 디지털 방식 관련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p>제15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① 위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p>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컴퓨터·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5조(디지털포렌식) ① 조사관은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제출을 명하여 이를 수령한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을 보장한다.

③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디지털포렌식 담당직원이 전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2.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증거 수집 업무의 경우에 사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이수한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디지털저장매체 증거수집) ①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의 디지털증거의 수집은 이미징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징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증거물로부터 저장매체만을 분리하여 수령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분리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디지털증거가 손상·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증거물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디지털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일시 및 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 해시값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수집된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복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확인서 또는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관에게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COVID-19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의·의결절차에 디지털 방식의 대응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결 소 과정에 적용가능한 디지털 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⁸⁸⁾ 시설장비 및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대응으로 심결의 전문성 및 효

88) 화상회의에 관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방식의 대응의 발전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 종결처리 가능성 제고

사무처장은 조사보고서를 금지하여 증거가 없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표 5-6> 조사절차의 종결 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조사절차의 종결 등) ② 사무처장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조사의 착수 후 사무처장에 의한 종결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조사 착수가 위반을 전제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태점검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당기간 진행됨에 따라 사실조사 착수가 마치 위반을 전제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조사 착수 시부터 소송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비협조적 양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무처장이 종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종결 처리의 부담이 존재한다.⁸⁹⁾

규정상 종결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종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조사 착수 전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실태점검)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종결제도가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 종결 가능성의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시 적용해야 한다. 기존 규정을 유지하되 종결 건을 보고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

89)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결제도는 심사관이 심사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처장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전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종결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지행위 위반 여부는 해당 국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종결처리에 대한 사무처장의 종결처리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심결 총괄 및 전문적인 지원 조직·인력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당시 심결지원팀을 두었으나, 현재는 심결지원팀 폐지로 심결을 총괄·관리하고 법률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 내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심결지원 업무(소관 심판·소송 총괄 및 법률지원, 위원회 회의 운영 등)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무 뿐 아니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방송공사 등 임원선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조정, 국회 관련 업무 등 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심결의 지원업무 외에 총괄 성격의 업무(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조사업무 총괄, 심결 보좌, 동향·통계분석, 심결사례집 등)는 여전히 이용자정책국 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소관이다.⁹⁰⁾ 심결의 보좌는 이용자정책총괄과가 하고 있지만 금지행위의 조사와 제재조치 등 실무에 관한 사항은 방송, 통신 분야별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결 업무가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표 5-7> 담당부서별 법위반 관련 업무(조사 및 제재조치 업무)

담당부서	법위반행위 관련 업무	비고
이용자정책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결 보좌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전조사보고서의 검토 통신이용자보호 관련 안전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검토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이용자 정책국
방송시장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 	방송 기반국

90) 따라서, 통계 및 사례집에 이용자보호국 담당 외의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방송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통신시장 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청취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전기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정책국
단말기유통 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 조사계획 수립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감시 및 시정명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상호간 금지 또는 제한규정 위반행위, 공정유통질서 저해행위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이용자 정책국
방송광고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 제재조치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범규준수 관리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방송 기반국
편성평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방송 기반국

인터넷이용자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이용자 정책국
지상파방송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 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방송 정책국
방송지원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방송 정책국

또한 최근 방송통신 이슈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심결의 안전 역시 다양해지고, 다방면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심결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전담 기구의 부존재로 인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해지는 이슈와 이해관계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인력적·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심결지원과 관련한 인력의 보강이다. 심결 업무의 절차를 볼 때 각 단계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안전의 작성, 심결의 작성, 최종확인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여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심결 업무에 대해 최초 안전 작성자(사무국, 조사관 등), 심결서 작성자(변호사 등), 자문·검토자(변호사 등), 최종확인자(심판관리관 등) 등 체계화된 인력의 보강을 통해 심결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과에서 작성된 안전에 대해 심의 전에 방송·통신 분야별 전문적인 쟁점과 법적인 관련 쟁점 검토를 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안전의 수정·검토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는 심의·의결서의 작성까지 이어져 심결을 받는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결서 작성 시에도 쟁점의 명확화와 통일적인 형식을 맞추기 위해 심결지원팀과 심결서 작성 과(팀)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심의·의결서는 참가한 위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완료되는데, 그 이전에 공개되는 심결서의 문구나 형식에 대해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통일적인 심결서의 작성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추후에는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심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법무담당관실 내 의안정책관리팀이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체계와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각 소관 부처에서 의안과 심결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안작성과 심결서 작성에 대해 심결지원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심결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단계별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피조사자 내지 피심인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개선 사항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심결 업무를 지원·총괄하는 담당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심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심결의 지원·총괄 조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위원장 산하의 독립된 조직으로 둘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각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와 제재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이를 심결 업무로 통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심결업무 관련 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 이슈에 대한 심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심위원제와 소회의제도

현행 방통위법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만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와 같은 전담기구에 관한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⁹¹⁾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거 법에서 전체회의와 소회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분하고 단순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회의에 의해 심결을 하도록 하여 심결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91)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소관 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방통위법 제22조제4항).

<표 5-8>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상임위원회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만 전념케 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합의제 기관과 달리 소회의 등을 두지 않는 점은 다른 조직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조직적인 비효율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결정의 내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5인의 상시 공동책임제도는 ① 합의제에 의한 정책결정의 신뢰성 부여, ② 특정 위원의 독선과 편견적 결정 방지, ③ 정책결정에서의 신중성 확보라는 장점을 갖지만, ① 정책추진의 비효율성 증대, ② 결정의 신속성 저하, ③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이라는 단점을

갖는다.⁹²⁾ 합의에 이루어지는 조직을 작게 만들수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합의를 이끄는 조직구성원이 많으면 구성원들 다수의 합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문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고,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정책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일관된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진다.

주심위원회 내지 소회의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업무량이 많거나 심판사건이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건처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전문성을 전제한 사실적 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심위원이 당해 사건을 주도하게 되면 나머지 위원들의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과 내용의 숙지가 떨어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주심위원이 갖게 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주심위원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가위원들의 책임성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한 보완적 장치에 대한 마련 역시 필요하다.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방송통신 이슈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주심위원을 둔 소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심위원회 체제하에서 소회의 내지 소위원회를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모두 9명의 구성원을 갖추고 있다. 인원 구성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이라는 점은 인력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건을 맡게 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고착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 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⁹³⁾는 점을 고려할 때도 주심위원제도의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절차를 고려할 때 주심위원제도의 도입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는 심의·의결에 보완적 기능을 하는 전문위원회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분쟁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

92) 주지홍(2009).

93) 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4.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편람의 제안

현재 방송통신 금지행위의 심결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계부터 제재조치에 이르기 까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다른 구성의 심결서가 작성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서는 이를 담당하는 각 과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심결서 작성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구성의 심결서는 이를 받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낮추고, 심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비효율성을 떨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심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심결의 작성과 결과물인 심결서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심결서의 전문성과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CC는 심결 절차의 진행과 안건 작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된 Agenda Handbook을 발간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 핸드북에는 실제로 안건을 작성하기 위해 글을 쓰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데, 형식 뿐 아니라 작성할 때의 태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핸드북에는 절차와 일정, 형식, 결정(결론)에 따른 문구 등 안건과 의결서 작성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잡해지고 있는 방송통신환경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슈는 심의·의결에 있어 새로운 쟁점이 등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심결서는 구성이나 형식,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가 일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심결에 있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두어 절차의 효율성을 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통신 금지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편람을 작성하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절을 바꾸어 보도록 한다.

제 3 절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심결 편람 제안

1. 연구반 개요

연구진은 방송통신 심결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조사자·피심인의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심결 업무에 활용할 편람과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심결체계 효율화 연구반’을 운영하여, 국내·외 심결제도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과거 심결사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심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지원 편람/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연구반 개요

- (명칭) 방송통신 심결체계 효율화 연구반
- (목적)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심결 관련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검토·자문 지원
- (구성) 방통위, 학계, 법무법인, 수행기관(연구소) 등 총 12명
 -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 의안정책관리팀
 - 건국대 로스쿨
 -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린, 세종, 에이앤랩, 울촌
 - 미디어미래연구소
- (운영기간) 2022.5월~12월 운영 (월 1회 내외 회의 개최)

<표 5-9> 방송통신 심결체계 효율화 연구반 운영

일 시		내 용
6월	1주	o [연구반 회의] 킥오프 - 연구반 진행 및 연구 분담
6월	2주	o ① 국내의 심결제도 분석 (1) 방통위
	4주	o ① 국내의 심결제도 분석 (2) 공정위, 개보위 o [연구반 회의] 1차 - 분석 결과 논의
7월	2주	o ② 국내 심결사례 분석 (1) 방통위 ① 유선
	3주	o ① 국내의 심결제도 분석 (3) 미국
	4주	o ① 국내의 심결제도 분석 (4) 유럽 등 o [연구반 회의] 2차 - 분석 결과 논의
8월	1주	o ② 국내 심결사례 분석 (1) 방통위 ② 무선
	2주	o ② 국내 심결사례 분석 (2) 공정위, 개보위
	4주	o ② 국내 심결사례 분석 (1) 방통위 ③ 부가 o [연구반 회의] 3차 - 분석 결과 논의
9월	1주	o ② 국내 심결사례 분석 (1) 방통위 ④ 방송
	2주	o 방통위 심결제도 개선방안 초안 마련
	4주	o [연구반 회의] 4차 -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 초안 논의
	5주	o 연구반 중간보고 및 간담회 자료 작성
10월	1주	o [연구반 회의] 5차 - 중간보고 및 간담회 자료 검토 및 준비
	3주	o 연구반 중간보고 및 간담회 등 개최 o ‘(가칭)심결지원 편람/매뉴얼’ 제안
	5주	o [연구반 회의] 6차 - 편람/매뉴얼 논의
11월	2주	o 방통위 심결제도 개선방안 마련
	3주	o [연구반 회의] 7차 - 편람/매뉴얼 및 개선방안 논의
12월		o [연구반 회의] 8차 - 총정리

2. 편람 주요 내용

가. 심결절차도 마련

[그림 5-1] 방송통신 금지행위 조사심결절차도

단계	세부 절차	담당 주체	의견청취 ²⁾	근거
	신고 인지	누구나 실·국		업무처리규정 제3조 (금지 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임의 조사	실태점검 ¹⁾ ↓ 함의있음인칭	조사관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행정 조사의 근거), 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 (의견제출) 등
조사	사실조사 ↓ 조사지속 불가 시 그 사유해소까지	소관 국(장)	② (재량)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조사 등) 업무처리규정 제4조 (사실조사의 착수), 제7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조사종지	사무처장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조사절차의 종결 등)
조사 보고서	조사보고서 작성 ↓ 증거없음, 시정조치 불필요·이행불가	소관 국(조사관) 작성, 사무처장에 보고		업무처리규정 제9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종결	사무처장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조사절차의 종결 등)
시정 조치안	시정조치안 작성 ↓	소관 국(장)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시정조치안 사전통지·의견청취	위원회	③ (필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의결	시정조치안 안건화 ↓	소관 국(장)이 위원회에 안건(시정조치안·의결) 보고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시정조치안 의결 ↓ 30일 이내	위원회	④ (재량)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시정조치안 의결)
	의결서 작성·통지	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의결서 작성과 통지)

- 1) 실태점검이 반드시 사실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조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지게 됨
- 2) 방통위 규정에서 의견청취 근거(②~④)의 주체는 ‘위원회’ 로, 행정조사기본법(①)의 주체인 ‘조사대상자’ 에 비해 재량권 성격이 강함
-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전 발송한 사전통지 내용(출석·보고·자료제출 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에 대한 의견 제출
-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검토 보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②는 ‘이해관계인’ 과 별개로 ‘당사자’, ③은 ‘피심인’ 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④는 ‘이해관계인 등’ 에 ‘당사자’ 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그림 5-2] 방송통신 일반 심결사항 절차도

단계	세부 절차	담당 주체	의견청취	근 거
심의 사전 절차	심의·의결안건 상정	소관 국(장)		회의 운영 규칙 제7조
	↓			
	심의·의결안 사전통지·의견청취	위원회	재량	회의 운영 규칙 제8조
	↓			
심의 의결	심의·의결	위원회	공개	회의 운영 규칙 제4조, 제9조
	↓ 30일 이내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12조
	↓			
	회의록, 속기록 공개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20조

나. 업무편람 세부목차 및 주요내용

<표 5-10> 업무편람 세부목차 및 주요내용

목차	주요내용
I. 절차	
1. 사실조사	
가. 사실조사 일반	o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의 성격, 근거, 조사원칙
나. 사실조사의 단서	o 사실조사 개시 단계의 절차 : 신고, 인지
다. 사실조사의 착수 및 금지 행위 사건의 관리	o 사실조사 착수 단계의 절차 o 실태점검 단계의 의견청취 절차
라. 사실조사의 방법	o 사실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 자료 등 제출명령, 출석요구 및 사실확인(사실조사 단계의 의견청취 절차), 현장조사, 디지털증거 조사
마. 변호인의 참여	o 변호인 참여 및 제한 원칙
바. 사실조사의 기간	o 사실조사 처리 기간
사. 조사보고서의 작성	o 조사보고서 작성, 등록, 보고 방법 o 보완조사 원칙
아. 사실조사절차의 종결	o 조사절차의 중지 및 종결 기준, 절차 o 재조사 원칙
자. 사건기록 보관방식 및 보관 기간	o 자료 작성·수집·접수 방법 o 자료의 보관 및 폐기 기간
2. 시정조치안의 작성 및 의견진술	
가. 시정조치안의 작성	o 시정조치안 작성 방법 및 내용
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o 시정조치안 작성 단계의 의견청취 절차
3. 위원회의 의결	
가.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o 시정조치안의 위원회 보고, 심의준비절차 개시
나. 시정조치안의 의결	o 시정조치안 의결 절차 o 의결의 유형 : 경고, 재조사, 심의절차의 종료, 무혐의, 사건종결처리, 심의중지
4. 처분	

가. 의결서의 작성과 통지	o 의결서 작성 및 통지 방법
나. 시정명령	o 시정명령의 기간,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보고 절차
5. 이의신청	
가. 절차	o 과징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이의신청 처리 방법
나. 재결 등	o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절차
6. 행정심판	
가. 절차	o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방법
나. 재결 등	o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절차
7. 행정소송	
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부	o 취소소송 제기 조건
나. 제소기간	o 취소소송 제기 기한
II. 양식	
1. 심결서 양식 개선의 기본방향	
가. 명확성	o 심결서 작성의 기본 3가지 원칙
나. 간결성	
다. 가독성	
2. 안건	
가. 심의·의결 안건	o 심의·의결안건 작성 방법 및 내용 - 표지 : 의안번호, 의결일자, 공개여부, 안건제목, 제출자, 제출일자 - 내용 :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 향후일정(계획), 참고사항 o 현행 심의·의결안건 표지 서식, 내용 서식
나. 보고안건	o 보고안건 작성 방법 및 내용 - 표지 : 보고일자, 공개여부, 보고제목, 작성과, 작성일자 - 내용 :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검토사항, 추진일정, 기타 o 현행 보고안건 표지 서식, 내용 서식
3. 심의·의결서	
가. 심의·의결서의 작성	o 의결서 작성 및 통지 절차

나. 심의·의결서의 주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서의 내용 : 안전번호, 안전명, 피심인인, 의결일, 주문, 이유,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 현행 심의의결서 서식
4. 심의·의결서의 문체 및 용어	
가. 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의 내용 및 예시 : 시정조치 번호부여,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포, 과징금 부과, 과태료, 시정권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행계획 제출, 보고의무
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의 내용 및 예시 : 기초사실(당사자 적격성, 사건 개요),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행위사실, 피심인의 주장, 관련규정, 인정사실, 판단),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결론
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제기 안내 방법 및 예시
III. 쟁점	
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가.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 의무 주체 및 이용자의 범위 ○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나.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 유형 별 해석
다. 이용약관 위반행위	
라.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마. 중요한 사항 미설명·고지 또는 거짓설명·고지	
바. 부당한 선택앱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제한 등	
사. 앱 마켓사업자 관련 금지행위	
2. 방송법상 금지행위	
가.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수범자의 범위, 금지행위 유형
나.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및 필수설비 접근 거부 등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 유형별 해석

다.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라. 방송시청의 방해 등	
마. 부당한 시청자 차별	
바. 이용약관을 위반한 방송 서비스 제공 등	
사.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행위	
아. 홈쇼핑 PP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자.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IV. 사례	
1. 무선통신 2. 부가통신 3. 방송	○ 편람 양식에 의거하여 유형 별 대표사례를 가공하여 제시
[부록] 관련규정	
1.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관련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나. 방송법 다. 전기통신사업법 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약칭 ‘IPTV법’) 2. 조사 및 심의·의결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 관련 가. 행정조사기본법 나.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지침

참고문헌

주지홍(2009), 방송통신위원회 심판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효율성제고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손영화(2014).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제13권 2호.

권오상(2008), 위원회 조직으로서 FCC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20권제14호.

오병철 외(2011), FCC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제도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FCC, Agenda Handbook.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공정거래위원회(2019). <심결절차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외교부(2020), EU 개황

<http://bundesnetzagentur.de/DE/Beschlusskammern/BK.html>

● 저 자 소 개 ●

권 오 상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
- 연세대 법학과 박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남 승 용

-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동국대 경제학과 석사
- 동국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이 순 환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수료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송 송 이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 수 엽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박 소 은

-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졸업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4

방송통신 분야 심결 체계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22년 12월 31일 인쇄

202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